

판례 공 보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19년 6월 15일

판시사항 색인 판 례 색 인

(2019년 1월 1일 ~ 6월 15일) 제 553호 ~ 제 564호

알 림

- * 표시는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판례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중요 판결 표시임
- ★ 표시는 전원합의체 판결 표시임

법 원 도 서 관

법 령 색 인

(가나다 순)

(\neg	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
가사소송법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3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폐)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4
건 축 법 ··································
건 축 법(구)5
건축법 시행령5
건축법 시행령(구)5
경범죄 처벌법6
경찰관 직무집행법6
경찰관 직무집행법(구)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구) 7
계 임 법
계 엄 법(구) 8
고등교육법(구)9
고용보험법(구)9
고용보험법 시행령(구)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구)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공공수택 특별법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1
공무원연금법11
공무원연금법(구)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67
군 인 사 법(구)38	
근로기준법38	(ㅁ부)
근로기준법(구)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7
근로기준법 시행령44	문화재보호법6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구)46	민 법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구)46	민 법(구)1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6	민사소송법102
금융지주회사법47	민사소송법(구)11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47	민사조정법1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47	민사집행법1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48	민사집행법 시행령11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실효)49	
	(ㅂ부)
(ㄴ 부)	법원조직법1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법 인 세 법117
관한 법률49	법 인 세 법(구) ······1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9	법인세법 시행령1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51	법인세법 시행령(구)121
농 지 법51	병 역 법121
농촌근대화촉진법(구) ······ 5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구) 1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22
(ㄷ 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1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구) 5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124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3	부가가치세법 124
도로교통법54	부가가치세법(구) 124
도로교통법(구)5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125
도로 법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25
도 로 법(구)56	부동산등기법126
도로법 시행령(구)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도시개발법57	조치법(실효)1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8	조치법 시행령(구)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6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칙163
보상 등에 관한 법률1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8	(ㅇ 부)
비송사건절차법1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64
	약 사 법 165
(ㅅ 부)	약 사 법(구)166
사립학교법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사회보장기본법131	진흥에 관한 법률1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131	외국환거래법 1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2	외국환거래법(구)17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13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3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구)1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3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35	규정174
상 법135	은 행 법(구)174
상 법(구)143	의 료 법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143	의 료 법(구)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145	임대주택법(구)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1	임대주택법 시행령(구)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15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구) 178
상 표 법152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179
상 표 법(구)154	
소 년 법 155	(ㅈ부)
소 년 법(구)1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179
소 득 세 법1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소 득 세 법(구)156	특례에 관한 법률179
소득세법 시행령(구)15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소액사건심판법158	특례에 관한 법률(구)180
수도권정비계획법1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수 도 법159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
수 산 업 법15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수산업법 시행령161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181
식품위생법1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구) 181
식품위생법(구)1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82
신 탁 법16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8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163	재와동포의 출압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구) 183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저 작 권 법183

전기통신사업법186	출입국관리법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87	(ㅌ 부)
조세범 처벌법18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 214
조세범 처벌법(구)1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4
주민등록법189	특 헤 법 ························2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0	특 허 법(구)2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0	특허법 시행령(구) ···········2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구) 190	114 10 0(1)
주 택 법191	(ㅍ 부)
주 택 법(구)191	
주택법 시행령19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주택법 시행령(구)193	등에 관한 법률(구)218 폐기무기기사서 서기초기 미 즈버기여기의
주택임대차보호법1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구) 194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219
중 재 법19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0
지방세기본법195	/ -
지방세기본법(구)196	(ㅎ부)
지 방 세 법1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20
지 방 세 법(구)1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
지방세법 시행령(구)199	하 수 도 법 ·································
지방세특례제한법(구)200	하 천 법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	하 천 법(구)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구)2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2
지방자치법 202	행정규제기본법 2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2	행정소송법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3	행정심판법 2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4	행정절차법2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5	행정절차법 시행령226
	헌 법226
(ㅊ 부)	헌 법(구)2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형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211	형 법(구)2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11	형 법(폐)243
초 · 중등교육법2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44
초·중등교육법(구) ·······212	형사소송법244
최저임금법(구) ·······213	형사소송법(구)26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13	형사소송규칙26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구)2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2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구) ·········· 2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2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구) ······ 263

공보호수 쪽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1.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 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1.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 ▶ 2018. 11. 9. 2015-559686 ······· 553 34

가사소송법

제24조

- 1.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2018. 11. 29. 2018 □ 14210 · · · · · · 554 156

공보호수 쪽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1.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 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 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 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6. 2018≜32 ······ 553 30

2. [4]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에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9조

1. [4]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최로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최'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에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최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7두62587 ······· 559 755

제93조

1.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 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제104조

1. [4]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07조

1.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 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 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공보호수 쪽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1.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 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 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6. 2018≜32 ······ 553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한 취지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닭의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로 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은 위임 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 위임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 - 43996 ····· 558 681

제8조

- 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한 취지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닭의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로 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은 위임 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 위임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폐)

제 **12**조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25. 2016[□]+5908 ······ 562 951

판	시	사	힝

공보호수 쪽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71	ᅙ
/\I		

-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에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피해자가 해당 장에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 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에 등에 대 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인과관 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질병관리본부장)

제76조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1조 (2015. 1. 6. 대통령령 제26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질병관리본부장)

▶ 2019. 4. 3. 2017-52764 ······ 562 988

제32조 (2015. 1. 6. 대통령령 제26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질병관리본부장)

▶ 2019. 4. 3. 2017-52764 ······ 562 988

건 축 법

제11조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두49642 ······ 564 1189

제83조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 - 49642 ······ 564 1189

공보호수 쪽수

건 축 법(구)

제5조 (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20조 (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49조 (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49642 ····· 564 1189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1. 10. 2017두75606 ······ 557 479

제118조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시행령(구)

제 100조 (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 - 49642 ······ 564 1189

판 시 사 힝

공보호수 쪽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1. (2)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 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짜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19417 ····· 555 3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1.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 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도19417 ······· 555 338

제2조

- 1.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 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짜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도19417 ······ 555 338

판	시	사	힝

공보호수 쪽수

제6조

- 1.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 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도19417 ······ 555 338

제10조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中236196 ······ 557 442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10조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¹+236196 ······ 557 44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구)

제2조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¹**+**236196 ······· 557 442

제3조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¹+236196 ······· 557 442

판	시	사	ે

공보호수 쪽수

제13조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 엄 법

제2조

1.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 ·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제9조

- 1. [1]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 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 이 당초부터 위한 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 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현·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ㆍ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제14조

- 1. [1]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 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 이 당초부터 위한 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 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계 엄 법(구)

제4조 (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3]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공보호수 쪽수

제 13조 (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 [3]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제15조 (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고등교육법(구)

제15조 (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사립대학교의 교수인 甲이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8¹4207854 ······ 554 151

고용보험법(구)

제27조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공보호수 쪽수

고용보험법 시행령(구)

제41조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 2019. 1. 31. 2016-52019 ······ 558 66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구)

제60조 (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및 이때 정년의 기산일(=실제 생년월일) /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두**41082 ······ 554 1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8中231536 ······· 555 276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적극) 및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 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8¹+231536 ······· 555 276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25조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 2019. 4. 3. 2015年250413 ······ 562 969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 [1]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 하는 방법

-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 급여 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무원연금법(구)

제64조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 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 하는 방법
 -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 급여 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6-550037 ······ 554 2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1.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제2조

-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3]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甲 공단이 乙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乙이 공탁금을 출급하자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고, 乙은 위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 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건물을 다시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중 위 건물 등에 관한 설치이전비용 상당액을 丙 조합과 乙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甲 공단 또는 乙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에서, 丙 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乙이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한 권리를 보유한 甲 공단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乙에게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¹+277419 ······ 563 1057

제16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두**51904 ······ 554 193

제20조

- 1.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 [4]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업인 정의 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2019. 2. 28. 2017**두**71031 ······ 560 824

제26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두**51904 ······ 554 193

제 28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두51904 ······ 554 193

제29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 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 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위 제29 조 제3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한 경 우, 수리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동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진 정한 토지소유자 확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수리 행위가 위법한지 여 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수리 행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항고소송으로 취소 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61조

- 1.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 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 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 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7. 2014<u></u> 11601 ······ 556 391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공보호수 쪽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75조

- 1. (2)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을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을 권한과 부담을 가질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甲 공단이 乙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乙이 공탁금을 출급하자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고, 乙은 위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 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건물을 다시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중 위 건물 등에 관한 설치이전비용 상당액을 丙 조합과 乙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甲 공단 또는 乙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에서, 丙 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乙이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한 권리를 보유한 甲 공단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乙에게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¹/₂₇₇₄₁₉ ······ 563 1057

제76조

- 1.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4두11601 ······ 556 391

제 77조

- 1.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공보호수 쪽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7. 2014<u></u> 11601 ······ 556 3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인지 여부(적극)
 -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 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산정 방식 /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중 기존 도로 부분과 수도 부분을 포함한 국공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의 산정 방식이 문제 된 사안에서, 무상귀속부지 중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8-55753 ······ 557 498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공보호수 쪽수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¹

2019. 24. 2016¹

2019. 24. 2016¹

2019. 258 531

제33조

- 1. [2]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을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제거할수 있을 권한과 부담을 가질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甲 공단이 乙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乙이 공탁금을 출급하자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고, 乙은 위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 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건물을 다시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중 위 건물 등에 관한 설치이전비용 상당액을 丙 조합과 乙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공탁자를 甲 공단 또는 乙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한 사안에서, 丙 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乙이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한 권리를 보유한 甲 공단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乙에게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中277419 ······ 563 1057

제44조

1.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공한 사례

공인중개사법

제2조

1.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31. 2017두40372 ······ 558 674

판	시	사	항
딘		^T	7

공보호수 쪽수

제38조

- 1.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2019. 1. 31. 2017- 40372 ······ 558 674

공직선거법

제8조의6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 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7도8822 ······ 554 245

제58조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1. 29. 2017도2972 ····· 554 242

제60조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1. 29. 2017도2972 ······ 554 242

제96조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 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7도8822 ······ 554 245

제252조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공보호수 쪽수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제 255조

-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 세 법

제42조

- 1.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장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5<u></u> 56120 ····· 554 198

- 2.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180 ······ 554 210

- 3.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106조

1. [2]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5두52616 ······ 559 765

관 세 법(구)

제30조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ㆍ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 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 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 2. 14. 2016<u></u> 34110. 34127 ······· 559 768

제 229조 (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아시아·대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 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6-545813 ······· 557 510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 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 대평양 경제사회위 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 아·대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6<u></u> 50488 ······ 558 689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1.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ㆍ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 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 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 2. 14. 2016두34110, 34127 ······· 559 768

제112조

1. [2]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 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

공보호수 쪽수

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장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고물 등 관리법(구)

제2조 (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두49642 ······ 564 1189

제3조 (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1.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 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 (소극)

▶ 2019. 1. 31. 2016- 564975 ······· 558 66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8도14262 ····· 556 425

공보호수 쪽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 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9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 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 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27조

- 1.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 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수 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8. 11. 29. 2018〒49390 ····· 554 1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 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76조

- 1.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 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수 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8. 11. 29. 2018**두**49390 ······ 554 189

공보호수 쪽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4조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 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 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2조

- 1.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 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경 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 부(적극)

> 2019. 1. 31. 2016中258148 ······ 558 602

제8조

-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 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경 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에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 부(적극)
 - ▶ 2019. 1. 31. 2016¹

 258148 ······ 558 602

공보호수 쪽수

국가배상법(구)

제2조 (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3¹ 14217 ······ 558 578

국가재정법

제96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 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경 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에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 부(적극)

▶ 2019. 1. 31. 2016中258148 ····· 558 602

국가정보원법

제11조

- 1. [3]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4]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의 구별 기준

▶ 2019. 3. 14. 2018⊊18646 ····· 561 882

제19조

- 1. (3)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4]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의 구별 기준

> 2019. 3. 14. 2018도18646 ······ 561 88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1.

1.

1.

1.

	판	시	사	ঠ্		공보호수	쪽수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약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 ▶ 2018. 11. 15. 201	의무가 있 양급여를 용을 지급 로 반환하	(는지 여 신청하여 급받을 수 나여야 한!	부(소극) 치료를 있었다는 다고 볼 수	및 이 경우 가 받았더라면 요 - 사정만으로 - 있는지 여부	입자 등이 처음 양기관이 국민 국민건강보험공 (소극)	부터 국 건강보험 단이 요	20
제41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약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 2018. 11. 15. 201	지 않고 의무가 있 양급여를 용을 지급 로 반환하	치료를 ! [는지 여 신청하여 급받을 수 [여야 한]	받은 경우 부(소극) 치료를 있었다는 다고 볼 수	, 국민건강보험 및 이 경우 가 받았더라면 요' - 사정만으로 ' - 있는지 여부(공단이 가입자 입자 등이 처음 양기관이 국민 국민건강보험공 (소극)	· 등에게 -부터 국 건강보험 -단이 요	20
제42조							
 [2] 포괄일죄와 실체적 전 도중 개설자 명의를 로 별개의 범죄가 성 ▶ 2018. 11. 29. 2018 	다른 의료 립하고 ²	로인 등으 남 죄는 실	로 변경한 1체적 경험	· 경우, 그 죄수 합범)	-관계(=개설지	명의별	248
제43조							
 [2] 포괄일죄와 실체적 전 도중 개설자 명의를 로 별개의 범죄가 성 ▶ 2018. 11. 29. 2018 	다른 의료 립하고 ²	로인 등으 남 죄는 실	로 변경한 1체적 경험	· 경우, 그 죄수 합범)	-관계(=개설지	명의별	248
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목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약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 2018. 11. 15. 201	지 않고 의무가 있 양급여를 용을 지급 로 반환하	치료를 ! [는지 여 신청하여 급받을 수 [여야 한]	받은 경우 부(소극) 치료를 있었다는 다고 볼 수	, 국민건강보험 및 이 경우 가 받았더라면 요' - 사정만으로 ' - 있는지 여부(공단이 가입자 입자 등이 처음 양기관이 국민 국민건강보험공 (소극)	· 등에게 -부터 국 건강보험 -단이 요	20
2018. 11. 13. 201	いけ23820	9				333	20

제47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中258209 ······ 553 20

제49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中258209 ····· 553 20

제58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¹ 258209 ······ 553 20

제61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中258209 ······ 553 20

제115조

1.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 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554 2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1.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 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554 24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국방경비법(폐)

제51조 (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 1.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 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국세기본법

제2조

- 1.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 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 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5-56120 ······ 554 198

2.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 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180 ······ 554 210

- 3.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4조

1.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 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3]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 등이 같은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丙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 아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 4. 11. 2017**두**57899 ······ 563 1122

제9조

[6]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및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 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 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8 - 128 · · · · · · 555 311

제14조

- 1. [1]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 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 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甲 주식회사가 형가리에 소재한 乙 외국법인과 외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 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 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 관청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乙 법인의 네덜란드 모회사인 丙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 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 과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사용료 소 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 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15. 2017**〒**33008 ······ 553 68

- 2. [1]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甲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형가리국 소재 법인인 △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丙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 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 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 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1] 국세기본법 주자나 내국 지회사(Bas	제1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우리나라의 e Company) ['] 를	정한 실질과 조세를 회피	세 원칙의 의 하기 위하여	554 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 기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217
4.	[1] 재산의 귀속 실질적으로 에서 비롯된 및 이 원칙이	13. 2018두128 ·· 명의자가 지배· 지배·관리하는 자 경우, 재산에 관] 조세조약의 해석	관리 능력이 ' 가 따로 있으 한 소득의 납 과 적용에서도	없고, 명의자여 며, 명의와 실 세의무자(=재 - 그대로 적용		311
	▶ 2018. 12.	27. 2016두42883			556	409
	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ll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 563	1048
	제47조					
	되어 있을 7 있는지 여부	것을 전제로 하는 (소극) 및 이는 관	무신고·과소· 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 E 마찬가지인>		
	없는 경우 7 전신고 여부 극) 및 사전 면이 유효하 징수와 납세	나산세 납세의무가 에 따라 관세 가산 신고 시에 잘못이 게 이루어진 경우 자의 협력의무 이희	인정되는지 여세 납세의무역 있었더라도 ² , 관세법 제4 행에 위반이 있	여부(소극) / - 이 존부를 달리 적법한 기한 니 2조가 담보하 있었다고 평가	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 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8
	되어 있을 7 있는지 여부	것을 전제로 하는 (소극) 및 이는 관	무신고·과소· 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 E 마찬가지인>		
	미 자유무역 것을 증명하 여부(소극) 는지 여부(소	협정(FTA) 제6.1 는 추가 정보를 저 및 이때 관세법 제 ≤극)	8조에 따라 ' 출한 경우, - 42조 제1항이	납세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 』따른 관세 :	법률 제10조, 제13조, 한·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 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 한 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	
3.	[1] 신고·납부형 되어 있을 것	할 본세의 납세의무 것을 전제로 하는	·가 인정되지 무신고·과소	않는 경우 본 신고·납부불성	554 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 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210
	[3] 관세법 제42 없는 경우 7	나산세 납세의무가	관세 가산세9 인정되는지 0	의 부과의 기 2 부부(소극)	시 여무(석극) 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559	765
	제48조					
	되어 있을 Ź 있는지 여부	맛을 전제로 하는 (소극) 및 이는 관	무신고·과소· 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 E 마찬가지인>	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 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지 여부(적극) 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5<u></u> 56120 ······ 554 198

- 2.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53180 ······· 554 210

- 3.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구)

제14조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 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 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 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9. 2014도9026 ······ 553 81

제26조의2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2. 13. 2018**두**128 ······ 555 311

제65조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 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 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7두75873 ······ 558 692

제80조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2 019. 1. 31.	2017두75873				558	692
1.	제81조 (2016. 15 과세처분에 관한 불년 였을 경우, 동일 사형 풀이할 수 있는지 여 ▶ 2019. 1. 31.	복절차에서 불 ^具 항에 관하여 특 부(소극)	록사유가 을 별한 사유	용다고 인정 없이 이를	하고 이에 따라 필	전의 처분을 되	692
			국세	징수법			
	제29조						
1.	[1] 국세정수법이 저는 시기 등을 따 [2] 저작권법상 저작 (적극) 및 하나의 는 것이 우선하는	·로 정하고 있? '재산권의 양도 의 저작재산권 ⁶ 는지 판단하는	지 않은 취 E 또는 처 [.] 게 대하여 방법	지 분 제한에 될 양도와 과서		¦요건인지 여부 루어진 경우 어	7.4
	•	2017 ~ 343/9				333	/4
1.	제38조 [1] 국세징수법이 저 는 시기 등을 따 ▶ 2018. 11. 15.	로 정하고 있	지 않은 취	지	구정하면서 압류의		74
	제41조						
1.	[1] 국가가 조세채권 사할 수 있는지▶ 2019. 4. 11.	여부(적극)			3자에 대한 채권		1048
	제42조						
1.	[1] 국세정수법이 제 는 시기 등을 따 ▶ 2018. 11. 15.	로 정하고 있	지 않은 취	지	규정하면서 압류의		74
	제47조						
1.	[1] 국세징수법이 저는 시기 등을 따 ▶ 2018. 11. 15.	로 정하고 있	지 않은 취	지	규정하면서 압류의		74
	제51조						
1.	[1] 국세징수법이 저는 시기 등을 따 ▶ 2018. 11. 15.	로 정하고 있	지 않은 취	지	규정하면서 압류의		7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16조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55904 ······· 554 193

제17조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51904 ······· 554 193

제20조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1**조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frac{1}{2} \) 51904 \(\text{constraints} \) 554 \(\text{19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공보호수 쪽수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u></u> 51904 ······ 554 193

제18조

-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29. 2018-51904 ······· 554 193

국유재산법

제6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551904 ······· 554 193

제7조

-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29, 2018**〒**51904 ······· 554 193

공보호수 쪽수

제27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0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51904 ······· 554 193

제40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 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 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u>+</u>51904 ······ 554 193

국 적 법

제2조

1.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 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 2018. 11. 6. 2018<u></u> 32 ····· 553 30

제3조

1.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

공보호수 쪽수

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 2018, 11. 6. 2018≜32 ······ 553 30

국 적 법(구)

제5조 (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인지 여부(적극)
 - [2] 외국인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햇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甲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에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 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 력 등의 제반 사정은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 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3] 귀화신청인이 구 국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6-31616 ······ 555 292

국적법 시행령

제2조

1.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 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 2018, 11. 6. 2018≜32 ······ 553 30

국 제 사 법

제 25조

1. [2] 표현대리에 관해 규정한 네덜란드 민법 제3편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표 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의 의미 및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 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onderzoeksplicht)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 인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中18753 ······ 554 116

공보호수 쪽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27. 2016-742883 ······ 556 4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제65조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제86조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제96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¹

204556 ······ 558 5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제2조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공보호수 쪽수

률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甲 공사가 재산세등을 납부한 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납부액 중 경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甲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도, 위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8中287287 ······ 564 1165

▶ 2019. 4. 23. 2018中287287 ······ 564 1165

제30조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甲 공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납부액 중 경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 항은 법문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 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甲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도, 위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2**조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제지정을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7¹+228618 ······ 558 6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사인(私人)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조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 단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甲 공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납부액 중 경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 항은 법문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 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甲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도, 위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 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8¹

2019. 4. 23. 2018¹

2019. 4. 23. 2018¹

군 인 사 법(구)

제10조 (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 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7-F62587 ······ 559 755

근로기준법

제1조

1.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 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2. 14. 2015다217287 ···································	721
	2.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4다27807	1153
			1133
	1.	제2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8. 12. 13. 2018다231536	276
	2.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019. 1. 17. 2018다260602	470
	3.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 2019. 2. 14. 2015다217287 559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21
*	5.	▶ 2019. 3. 14. 2015두4632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867

공보호수 쪽수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¹ + 2451 ····· 563 1074

- 6.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2]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4¹4²7807 ······ 564 1153

- 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9. 4. 23. 2016⁻**‡**277538 ······ 564 1161

제6조

- 1.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 [4]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甲이 국립대학인 乙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 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그 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잘못이 있다고 한 시 ▶ 2019. 3. 14. 201			561	867
	제15조				
1.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등에서 마련한 교원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무효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효로 보기 위한 요건 554	151
2.	한 경우, 근로자가 산정한 추가 법정수 자의 추가 법정수당	노사합의의 무효 당을 청구하는 것 청구가 사용자의 하여 신의성실의	를 주장하며 정기성 이 신의성실의 원칙 게 중대한 경영상	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되는지 문제 된 사인 회사에 중대한 경영/ 수 없으므로 乙 등의	난에서, 제반 사정 상의 어려움을 초 청구가 신의성실	에 비추어 추가 법 래하거나 기업의 존 !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구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21
3.	한 경우, 근로자가 산정한 추가 법정수 근로자의 추가 법정	노사합의의 무효 당 등을 청구하는 수당 청구 등이 위태롭게 하여 신	를 주장하며 정기성 = 것이 신의성실의 사용자에게 중대한	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 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	
	금을 통상임금에 포 칙에 위배되는지 문 포함시킴으로써 추기 움을 초래하거나 기 직금 청구가 신의성	함하여 산정한 추 제 된 사안에서, ト 퇴직금 등을 지 업의 존립을 위태 실의 원칙에 위배	가 퇴직금의 지급을 제반 사정에 비추 급한다고 하여 甲 롭게 한다고 단정학 된다고 볼 수 없다	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고 한 사례	1153
	제55조				
1.	한 경우, 근로자가 산정한 추가 법정수 자의 추가 법정수당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합의의 무효 당을 청구하는 것 청구가 사용자여 하여 신의성실의 (적극)	를 주장하며 정기성 이 신의성실의 원칙 게 중대한 경영상 원칙에 위반되는	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 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되는지 문제 된 사인 회사에 중대한 경영 수 없으므로 乙 등의 ▶ 2019. 2. 14. 201	난에서, 제반 사정 상의 어려움을 초 청구가 신의성실 5다217287 ⋯⋯⋯	에 비추어 추가 법 래하거나 기업의 존 !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가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21
2.	한 경우, 근로자가 산정한 추가 법정수 근로자의 추가 법정	노사합의의 무효 당 등을 청구하는 수당 청구 등이	를 주장하며 정기성 = 것이 신의성실의 사용자에게 중대한	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56조

- 1.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60조

- 1.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공보호수 쪽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 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 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4년-27807 ······ 564 1153

근로기준법(구)

제2조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 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 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 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 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 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¹7-2451 ······· 563 1074

제 **18**조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 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 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제50조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 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 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 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¹ + 2451 ····· 563 1074

공보호수 쪽수

제55조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 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 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제56조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 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 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019. 1. 17. 2018년260602 ······ 557 470

제60조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 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 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 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 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 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2. 14. 2015中66052 ······ 559 715

제**94**조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 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 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 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1.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 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공보호수 쪽수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2]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4年27807 ······ 564 115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

제24조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 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 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 2019. 1. 31. 2016-552019 ······ 558 663

제55조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 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 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보호수 쪽수

-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구)

제22조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구)

제22조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 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 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 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 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019. 1. 17. 2018中260602 ······ 557 470

제8조

1.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

공보호수 쪽수

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 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 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4¹4²7807 ······ 564 1153

금융지주회사법

제 15조

1.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u></u>+60662 ······ 557 505

제70조

1.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1.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60662 ······· 557 50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1.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2]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성 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송 계속 중 甲 은행과 100% 주주가 되고 乙은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1. 29. 2017다).013%를 보유 丙 주식회사가 - 甲 은행의 주 을 전혀 보유하	유한 주주약 · 주식교환 주주로서의 ·지 않게 !	인 乙 등이 대 나을 완료하여 지위를 상실 된 乙은 원고적	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 丙 회사가 甲 은행의 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138
		기	업구조조경	정 촉진	[법(실효)		
1.		조 (2011. 5. 19. 법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차 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 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 ▶ 2019. 4. 3. 2016다409	권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이 변 당 채권금융기	로 하여금 <u></u> 나대매수청 관에 미치	구권을 행사힐 는지 여부(소	수 없도록 의결한 경	972
1.		0조 (2011. 5. 19. 법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처 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 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 ▶ 2019. 4. 3. 2016다409	권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이 변 당 채권금융기	로 하여금 나대매수청 관에 미치	구권을 행사힐 는지 여부(소	수 없도록 의결한 경	972
1.	(1)	5조 (2011. 5. 19. 법생 체권금융기관협의회가 체도록 하면서도 해당 체전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주체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약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약기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의회 의결의 효력이 해당 ▶ 2019. 4. 3. 2016다409	권금융기관으로]금융기관이 변 당 채권금융기 관으로 하여금 외를 소집하당 장소 및 목적 · 채권금융기관	로 하여금 난대매수청 관에 미치 는 부실징후 면서 해당 등에 관한 에 미치는	구권을 행사힐 는지 여부(소· -기업에 신규 채권금융기관 사항을 통지 지 여부(원칙	수 없도록 의결한 경 구)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 에 회의 개최 예정일의 하지 않은 경우, 위 협	972
1.	(1)	7조 (2011. 5. 19. 법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차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을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의회 의결의 효력이 해당 ▶ 2019. 4. 3. 2016다405	권금융기관으로 1금융기관이 변 당 채권금융기 관으로 하여금 외를 소집하당 장소 및 목적 · 채권금융기관	로 하여금 난대매수청 관에 미치 는 부실징후 면서 해당 등에 관한 에 미치는	구권을 행사힐 는지 여부(소 기업에 신규 채권금융기관 사항을 통지 지 여부(원칙	수 없도록 의결한 경 극)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 에 회의 개최 예정일의 하지 않은 경우, 위 협	972
1.		8조 (2011. 5. 19. 법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 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 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	권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이 변 당 채권금융기	로 하여금 <u>}</u> 대매수청 관에 미치	구권을 행사힐 는지 여부(소	수 없도록 의결한 경	072

공보호수 쪽수

제20조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1.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징후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 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한 경 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2019. 4. 3. 2016다40910 ······ 562 97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실효)

제4조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 실효)

1. (2)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정후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4. 3. 2016⁺40910 ······ 562 9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1.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 가치 노동'의 의미 및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 [4]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甲이 국립대학인 乙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 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그 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14. 2015-546321 ······ 561 8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1.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판	시	사	힝

공보호수 쪽수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2. 14. 2015中66052 ····· 559 715

제29조

1. [5]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4. 23. 2014¹427807 ······ 564 1153

제29조의2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 취지 /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지급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사용자의 위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제32조

1.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이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 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 극) /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제33조

1. [5]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4. 23. 2014¹77807 ······ 564 1153

제34조

1.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8 - 41532 ····· 554 180

제81조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 취지 /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

공보호수 쪽수

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사 용자의 위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 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7두33510 ······ 564 118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절금)

제14조

★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 2019. 2. 21. 2014**두**12697 ····· 560 811

제15조

★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농 지 법

제2조

1.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 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7-65357 ······ 559 761

2. (2)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6조

1.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m²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제7조

1.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두65357 ···································	761
1.	제10조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두65357	761
	제42조	
1.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7두65357	761
2.	 ▶ 2019. 2. 14. 2017年05357 [2]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8年42955 	
	제62조	1110
1.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 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2019. 4. 11. 2018두42955	1116
	농촌근대화촉진법(구)	
1.	제2조 (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8다255105	629
1.	제126조 (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2019. 1. 31. 2018다255105	629
1.	제127조 (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	

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 2019. 1. 31. 2018다255105 ······ 558 629

제 129조 (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개인 소유이턴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 2019. 1. 31. 2018中255105 ······ 558 6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구)

제11조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11조의2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 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9. 2016-51610 ······ 553 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 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 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 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4조

- 1. [1]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 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 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 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8도14262 ······ 556 425

제44조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 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2018. 11. 15. 2018도11378 ······ 553 89

제93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 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48조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 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 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9도1503 ····· 563 1132

판	시	사	힝

공보호수 쪽수

제148조의2

-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 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2018. 11. 15. 2018도11378 ······ 553 89

제151조

1.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8 **Ξ** 14262 ······ 556 425

제156조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9도1503 ······ 563 1132

도로교통법(구)

제54조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 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 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9至1503 ······ 563 11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 1. [1]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 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공보호수 쪽수

▶ 2018. 12. 27. 2018도14262 ······ 556 425

도 로 법

제99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 로 법(구)

제61조 (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 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 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2] 도로점용허가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도 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 용면적에 포함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중 위 부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행정청 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 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3]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 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 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17. 2016-56721, 56738 ······ 557 481

제66조 (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 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 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 557 481

제68조 (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5]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 리청이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관리청이 감면사유로 규 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보호수 쪽수

▶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 557 481

도로법 시행령(구)

제69조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 는 토지'에서 인근 토지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17. 2016-56721, 56738 ······ 557 481

제73조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5]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 리청이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관리청이 감면사유로 규 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1. 17. 2016<u></u> 56721, 56738 ······ 557 481

도시개발법

제42조

1. [1]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 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8[‡]-255105 ······· 558 6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 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 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 2019. 1. 10. 2017두43319 ······ 557 474

제21조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 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 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 2019. 1. 10. 2017두43319 ······ 557 474

제21조의2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 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 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제33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u>56497</u> ······ 559 777

제34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제40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 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 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하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 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31. 2018中227520 ······ 558 626

제64조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 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5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

2019. 24. 2016⁻

2019. 358 531

제 97조

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 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3. 2017- 66824 ······ 562 998

제129조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 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32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제135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제141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제142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u>56497</u> ······ 559 7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0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3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제15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 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9. 2. 14. 2016<u>年</u>6497 ······· 559 777

제20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하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21**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도6497 ······ 559 777

공보호수 쪽수

제39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5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 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3. 2017- 66824 ······ 562 998

제84조의2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 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6<u>5</u>6497 ······ 559 7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 [4]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를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징금을 가중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조의2

-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위 부당성 판단 기준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4]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때고려할 사항 / 이른바 '약탈 가격 설정(predation)'에 적용되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부당성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실질적으로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회계적·경제적 분석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

1.

1.

1.

2.

3.

퐌	·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	빙성을 증명함	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의 사실상의	
	14726			558	643
6조					
여 외형상 하나의 과정위에 대한 과정금 부과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	금 납부명령을 만 위법하고 소 로가 있는 경우 하는지 여부(적	하였으나 여러 소송상 그 일부 , 그 일부 위빈 극)	개의 위반행위 중 위반행위를 기초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일부 위반행 한 과징금액 액에 해당하	643
Იᄌ 이 ኃ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 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성	당연 무효인기	이 여부(소극)			437
22조					
과정금의 기본 산정기를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처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	준을 '계약금액' 세결된 계약금액 적극) 및 관련· 있는지 여부(소	으로 규정한 추 에 해당되어야 성이 인정되지 	지 / 위 '계약금액 : 한다는 의미의 '관 않는 계약금액을 괴	의 경우에도 런성'이 있을 징금의 기본	56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l 계약상의 금 ⁽	액 중 일부가 더	내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 접 관여한 경우를 구 고 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정 여 위법한지 여부(원칙	마징금부과 세투 Ⅰ금을 가중한 ۶ 적 소극)	부기준 등에 관 경우, 과징금부:	한 고시 IV. 3. 나. 과처분이 재량권을 ⁽	(5)항의 적 일탈·남용하	398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경우, 계약금액이 과징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 찰에서 주계약자인 甲 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사 등이 위 입찰에 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	한 행위에 의현 금 부과 한도 한 공동계약으 주식회사가 부. 참가하여 낙칠 여 낙찰자 및 네위원회가 투	: 부당한 공동한 및 그 산정의 7 로 발주된 천연 계약자인 乙 주 날을 받고 공사 투찰률을 결정 1 회사에 부계역	J위에 대하여 과정금 기초가 되는지 여부(년가스 주배관 건설등 식회사 등을 포함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하는 합의를 하는 등 당자 계약금액 부분야	을 부과하는 적극) 당사 공구 입 여 공동수급 는데, 甲 회 · 공동행위를 이 포함된 공	
	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나 분석방법 등의 신구속력이나 부당성에 본(적극) ▶ 2019. 1. 31. 2013두. 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적의 가 위반적의 함상 하나의 과장의 사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안 취소하여야 한 보안 보안 기존 일이 1. 31. 2013두. ○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기본 산정기준이 보안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본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장거래의 원회가 비료를 받한 사정이 있는 경약 하는지 여부(전극) 공정거래의원회가 비중을 집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약 하는지 여부(전극) 공정거래의원회가 비중을 임찰담합 및 이와 유사업가 관리방식에 의장에서 주계약자인 되는 이유로 공정가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가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가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가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의 입찰에 관해 중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이 위 입찰에 관해 중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이 위 입찰에 관해 중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이 위 입찰에 관해 중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이 가로 공장가 가는데 가를 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는데 가를 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등이 가를 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가 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장가 가 되었다고 있다는 이유로 공장가 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장가 가 되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	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적극) ▶ 2019. 1. 31. 2013두14726	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병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적극) ▶ 2019. 1. 31. 2013두14726	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가 위 경제분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적극) ▶ 2019. 1. 31. 2013두14726	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가 위 경제본석의 기초자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병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사실상의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3두14726

제52조의2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6<u></u> 51658 ······ 558 659

사 항 파 시

공보호수 쪽수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 2018, 12, 27, 2015-744028 ······· 556 398

제54조

-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피심인이 신청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 · 복사 요 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정거래 위원회가 위 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심인 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 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절차상 하자로 피심인의 방어권 행 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8. 12. 27. 2015-744028 ······ 556 398

제55조의2

-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피심인이 신청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 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정거래 위원회가 위 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심인 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 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절차상 하자로 피심인의 방어권 행 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8. 12. 27. 2015-744028 ······ 556 398

제55조의3

1. [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과징금 가중 사유로 정한 고위 임원의 관여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정한 과징금 산정의 참작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위 고시 IV. 3. 나. (5)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 였으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부 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748737 ······· 553 51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3.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 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두49044	
4.	▶ 2018. 12. 13. 2018두51485	299
5.	아 아는지 역구(역 ¬) [4]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를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징금을 가중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2. 27. 2015두44028	398
	경우, '계약금액'이 과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정금 납부명령 등을 한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6두51658	6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1.	제10조의2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다227000	437
1.	제15조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다227000	437
	제16조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이나 탈법행위가 △ ▶ 2019. 1. 17. 20		-				557	437
제	17 조 (2017. 4. 1	8. 법률 제 [·]	14813호:	로 개정되	기 전의	것)		
	구 독점규제 및 공 이나 탈법행위가 A	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채무보증	
	> 2019. 1. 17. 20	15타227000					557	437
	19조 (2017. 4. 1] 구 독점규제 및 공					•	채무보증	
	이나 탈법행위가 A ▶ 2019. 1. 17. 20		-				557	437
제	66조 (2017. 4. 1	8. 법률 제	14813호:	로 개정되	기 전의	것)		
1. [2]	구 독점규제 및 공 이나 탈법행위가 시	 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	극)			
	2 019. 1. 17. 20	15닥227000					557	4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위 부당성 판단 기준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4]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이른바 '약탈 가격 설정(predation)'에 적용되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부당성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실질적으로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회계적 ·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가 위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사실상의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3두14726 ······ 558 643

제9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두49044 ··································		
▶ 2018 11 15 2016등49044 ·····		
2. [3]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	56
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5두44028 ······	556	398
 ▼ 2016. 12. 27. 2013 ← 14026 3.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현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6두51658 		
제21조의4		
1.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다227000 ·································		437
제61조		
1. [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과징금 가중 사유로 정한 고위 임원의 관여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정한 과징금 산정의 참작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위 고시 IV. 3. 나. (5)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부 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 - 	
 ▶ 2018. 11. 15. 2016두48737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조 	-	51
접 관여'한 경우라고 보아 '구 과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 항을 적용하여 과정금을 가중하였으나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직원과 미찬가지라거나 관여행위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에 그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었는 경우, 과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두49044 ··································	553	56
3. [3]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고전거래의원하가 비득기 일원이 독절규제 및 고전거래에 과하 법률 의바해외에 지		

공보호수 쪽수

접 관여한 경우를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징금을 가중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2. 27. 2015**두**44028 ······ 556 39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7조의5 (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227000 ······· 557 437

제21조의4 (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5¹+227000 ······ 557 4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2. [1]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 ⊆ 14609 · · · · · 563 1134

제3조

★ 2. [1]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도14609 ······ 563 1134

공보호수 쪽수

제58조

★ 2. [1]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도14609 ······ 563 1134

문화재보호법

제2조

1.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 2019. 2. 28. 2017두71031 ······ 560 824

제3조

1.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 2019. 2. 28. 2017두71031 ······ 560 824

제4조

- 1.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 [3]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 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4조

1. [3]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 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2. 28. 2017두71031 ······ 560 824

제42조

1. [3]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 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2. 28. 2017- 71031 ······ 560 824

제83조

1. [3]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2. 28. 2017- 271031 ······· 560 8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1.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의미
 -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 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 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미 법

제1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¹

2016

제2조

1. [3]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 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 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 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3			
파	시	사	ૅ ટ્રો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中264556 ····· 558 531

3.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 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경 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 부(적극)

- 4.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기 중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中203596 ······ 558 607

- 5.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6.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乙이 정기상여 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4¹+27807 ······ 564 1153

공보호수 쪽수

제31조

- 1.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 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 여부(원칙적 적극)
 - [3]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그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그때까지 형성한 재산이 위 조직에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 [5]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 야 할 사항
 - ▶ 2019. 2. 14. 2018日264628 ······ 559 747

제40조

1.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기본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2. 28. 2018¹ 800 ····· 560 810

제43조

1.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기본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2. 28. 2018□H800 ······ 560 810

제59조

1.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는데, 위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63조

1.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는데, 위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	시	사	항	공보	호수	쪽수
	판단하는 기준 ▶ 2018. 11. 20.	2018¤}5471					553	26
1.		크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한정승	인자가 배당!	승인자가 알고 있는 변제를 하는 시점)		1
1	제103조 [2] 구 독점규제 및	고저기계에 교	1차 버류	제10 ス이 (9 괴 리하 쾨1	5ス르 이바차 케모H	즈	
1.	이나 탈법행위기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그를 기원한 제기도		437
2.	태아를 피보험자로 후 후 위 보험계약에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하는 상해보험 정한 우연한 녀부(적극)	계약의 효 사고로 싱	[력(유효) 해를 입은	및 출생 전 은 경우, 보험	태아가 보험기간 개	시 험	
	제105조							
	수 있는지 여부(및 누구를 교원의 학교법인의 자유 (3) 학교법인이 교원 등에서 마련한 3 등에서 마련한 3 교원연봉계약제를 를 차등 지급하 정한 강행규정에 서, 위 규정이 2 강행규정에 위반 정관의 해석에 3	가하여 연간 및 (적극) / 사립 으로 임용할 것 의사 내지 판 에 대한 성과 교원실적에 대 보수인 뿌이 그 규정 중 신입사 도록 정한 규건 보인의 정관 된다고 보기 관한 법리오해 2018다20785	보수총액을 학교 교원 인지, 어디 단에 따라 급적 연봉 한 명자항 U 모집실 성이 구정에 가어라운데 의 잘못이 4	· 결정하는 임용계약 임용계약 기준: 결정되어 목과 기준 본 운영하는 적을 교원 인의 정본 따라 삭 고등교육 및 이를 보 있다고 학	 제도인 성고 의 법적 성질과 방법으로 ! 야 할 사항인가 (하기 위하여) 을 무효로 보건 실적 평가 대간 감된 보수 등 감된 보수 등 값 사례 	나급적 연봉제를 시행 (=사법상의 고용계약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관이나 교원보수규 기 위한 요건 신을 상대로 乙 법인 상의 하나로 삼아 보 교법 등 관련 법령에 의 지급을 구한 사안 법 등 관련 법령이 정 택시의 판단에 학교법	할)))))))))))))))))))	151
2.	한 책임을 부과 이러한 이치는 2	방법 및 특히 하게 되는 경우 거동에 의한 독	당사자 일 우에는 더 무시적 법률	l방이 주정 욱 엄격하 불행위에서	상하는 계약 니 게 해석하여이 도 마찬가지역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 하는지 여부(적극) 기 여부(적극)	대 /	
3.	공동생활관계 하 제 된 사안에서, 금으로 하기로 ⁶ 해 등의 잘못이 ▶ 2018. 12. 27.	영하였는데, - 소 시에 정산 위 금전거래 예정한 것이라 있다고 한 사 2015다73098 의 의의 및 요	그들 사이 후 잔존 를 공동생 고 보기 여 레 	에 계좌이 금원을 더 활관계 히 어려운데도 	체 등을 통히 체여금으로 하 세소 시에 정신 E, 이와 달리 	이루어진 금전거래 기로 예정한 것인지 한 후 잔존 금원을 대 본 원심판단에 법리	가 문 여 오 556 는	349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	까지 이루	어져야 합의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 내지가 성립하는지 여	부	
		" 1 = 0 1	- 11/1	E 1113	V- = 1 \ \ 11 \ 1	,— , ,c pet/		

		판 시 /	나 :	항		공보호수	쪽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위 법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2018. 12. 27. 2016다274270, 274287	여부(원칙	직적 소극)			364
4.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으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 ▶ 2019. 1. 17. 2015다227000	에 관하여 단하는 병	명확하게 방법	정하지 않은 경	우, 금지	427
5.	[1]	▶ 2019. 1. 17. 2013 422/000 ·································					437
	[2]	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 연예인인 甲 등이 연예기획사인 乙 주식 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甲 등이 방송사 송사들이 甲 등과 乙 회사, 乙 회사의 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방송사들과	회사와 들을 상다 채권양수 권리자인	전속계약을 내로 출연료 :인 및 채권 지 알 수 없	체결하고 방송시 지급을 요청하기 자들이 출연료치 다'는 이유로 2	ト들의 프 사, 위 방 ∦권에 관 ∤ 출연료	
		이 甲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2019. 1. 17. 2016다256999					445
6.	(1)	▶ 2019. 1. 17. 2010年250999 ··································	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3	도시를 묵	443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을 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 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등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목사	었는데, Z 불한 丙 * 상대로 비 에 따른 목적 범위	乙 회사가 신 주식회사에 미밀유지의무 손해배상을 님에서 위 설	규 화력발전소를 위 설계자료를 를 위반하였다다 구한 사안에서, 계자료를 제공하	를 건설하 제공하여 벼 부정경 乙 회사 나여 사용	
		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다284885 ··································				558	619
	후 9	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학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학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3. 28. 2016다211224 ···············	해를 입은	는 경우, 보현	념기간 중에 발생	생한 보험	0.50
8.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 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힐	l 것으로 l증권 원 urrende 운송인의 t 수 있는	. 처리함으로 본 없이 즉/ er B/L)'이 지시에 따 =지 여부(원	써 선하증권의 시 운송품을 인도 발행된 경우, 도 라 수하인에게 칙적 적극)	상환증권 E받을 수 E착지 선 화물인도	
9.		▶ 2019. 4. 11. 2016다276719 ····································	하는 방 실시계획 甲이 지 발을 이- 발을 취득 주민된 실시계획 남사 및 1	법	기 전부터 어입국 의 행정지도에 미 급권을 포기하고 면원부에 등록하 부본부를 통해 티 어민피해보상대 일을 적용한다, '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한 다음	권을 가지 나라 수산 종전 어 였고, 그 타을 포함 책위원회 조사대상 내용으로 피해 예	1045
		측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어민들에게 보기	당 대상	어업권에 대	한 보상을 하였	는데, 甲	

공보호수 쪽수

의 신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 등록이 위 고시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예측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 합의의 해석상 甲의 신 어업권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¹ 284400 ····· 563 1062

- 10.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체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7¹4²1176 ······ 564 1170

제108조

1.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2. 27. 2017¹4290057 ······ 556 370

제165조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17. 2018다24349 ······ 557 463

제166조

1.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2019. 1. 31. 2018다255105 ······ 558	629
	제168조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9. 1. 17. 2018다24349	463
2.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 2019. 3. 14. 2018두56435 56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 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2019. 4. 3. 2018 다 296878	
4.	□ 2019. 4. 3. 2016 7290676 □ 302 □ 303 □ 304 □ 305 □ 4 □ 4 □ 509 □ 4 □ 509 □ 4 □ 509 □ 6 □ 6 □ 7 □ 6 □ 7 □ 6 □ 7 □ 7 □ 8 □ 8 □ 8 □ 19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1 □ 12 □ 13 □ 13 □ 14 □ 15 □ 15 □ 16 □ 17 □ 17 □ 17 □ 18 □ 19 □ 10 □ 10 □ 10 □ 10 □ 10 □ 10 □ 10	
	제170조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9. 1. 17. 2018다24349	462
2.	▶ 2019. 1. 17. 2018나24349	463

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시점 /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이 취하된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 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

		판 시	·	· ·	공보호수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성 력은 보험급여 결정여 효중단의 효력과는 별	상 고유한 시효중 에 대한 임의적 별개로 존속하는	단 사유인 불복절차인 네 여부(적:	보험급여 청구에 ¹ 심사 청구나 재심 _구)		
1.	제174조 [2] 최고를 여러 번 거듭 기준 시점 / 소를 제 이 있는지 여부(원칙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3. 14. 2018	기한 후 소송이 적 소극) 및 이 금)	취하된 경어	우, 재판상의 청구 는 소가 각하된 경	가 시효중단의 효력	872
1.	제178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으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 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 ▶ 2019. 1. 17. 2018	기 있는지 여부(? 결 후에 발생한 부(적극) 및 이는 }결이 확정된 후 의 채권이 소멸 적 적극)	적극) / 시 변제, 상계 = 소멸시효 10년이 지 시효 완성으	효중단을 위한 후. , 면제 등과 같은 완성의 경우에도 나나 제기되었더라. 으로 소멸하였는지(소 절차에서 채무자 채권소멸사유를 들 마찬가지인지 여부 도 법원은 채무자인	463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상의 시효중단 사무 및 위 보험급여 청구 종료되어 새로이 3년 ▶ 2019. 4. 25. 2015 	제113조는 같은 유와는 별도의 고 에 따른 시효중당 의 시효기간이 2	· 법 제362 2유한 시효 간은 근로복 진행되는지	조 제2항에 따른 <u>!</u> 중단 사유로 정한 ·지공단의 결정이 ! 여부(적극)	보험급여 청구를 민 것인지 여부(적극)	
1.	제185조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티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등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2019. 1. 24. 2016	타적인 사용·수약적·배타적인 사석·배타적인 사·수익권의 행시 독점적이고 배타 신의 독점적·배태 준 / 토지 소유 여부(적극) 및	식권의 행사용·수익권용·수익권사기 제한되 적인 사용· 차적인 사용· 자가 사정! 그러한 사건	나가 제한되는지 편 의 행사가 제한되∙ 의 행사 역시 제한 는 토지의 소유권• · 수익권을 행사할 · · 수익권의 행사를 변경을 이유로 완々 형변경이 있는지 편	단하는 기준 및 효는 경우, 위 토지를 난되는지 여부(적극)을 특정승계한 자가 수 있는지 여부(원 는 허용할 특별한 사 전한 소유권에 기한	531
1.	제186조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는 부(소극) 및 위 등기 (=등기의 유효를 주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 기원인이 존재하는 전 산등기법에 따라 이름	가 현재의 실체 장하는 자) 동산등기법 적용 것으로 추정할 수 루어진 가등기에	관계와 부: · 당시 행하 · 있는지 ㅇ 관해서도 □	합한다는 점에 관합 -여진 가등기의 경· ɨ부(소극) 및 이는 마찬가지인지 여부(한 증명책임의 소재 우, 그 구체적인 등 · 현행 민법과 부동 (적극)	
2.	▶ 2018. 11. 29. 201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554 우, 그 토지에 대한	148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 558 531

- 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 임야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같은 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2019. 1. 31. 2018다287751 ······ 558 636

제197조

- 1. [1]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지 여부(적극)
 - [2]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甲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고, 그 후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丙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화을 구한 사안 에서,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丙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丙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가 주장 하는 乙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¹-216028, 216035 ······ 558 610

제201조

- 1. [1] 점유가 권원 없는 것임이 밝혀진 경우,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지 여부(적극)
 - [2]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甲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고. 그 후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丙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반소로 위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에서,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丙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丙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가 주장 하는 乙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¹+216028, 216035 ······· 558 610

제211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

2019. 24. 2016⁻

2019. 35. 531

제212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¹

2019. 24. 2016¹

2019. 24. 2016¹

2019. 358 531

제213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214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쪽수

	판 /	시 /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 2019. 1. 24. 2016	· 수익권의 ·점적이고 의 독점적 준 / 토지 여부(적극)	행사가 배타적인 · 배타적 소유자기 및 그러	제한되는 사용 인 사용) 사정변 한 사정	 토지의 소유 수익권을 행사 수익권의 행사 1경을 이유로 변경이 있는지 	권을 특정승계 할 수 있는지 나를 허용할 특 완전한 소유권 판단하는 기준	한 자가 여부(원 별한 사 에 기한	531
데219조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						

★ 1. 5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¹

204556 ······ 558 531

제245조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 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2019. 4. 3. 2018¹+296878 ······ 562 984

제247조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 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2019. 4. 3. 2018中296878 ······ 562 984

제279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¹

204556 ······ 558 531

제341조

1.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 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 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 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2. 14. 2017¹4274703 ······ 559 743

판	시	사	항

제352조

1. (2)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 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 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 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6中265689 ······ 556 355

제353조

1. [2] 타인에 대한 체무의 담보로 제3체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 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 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 가지인지 여부(적극)

제356조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제370조

1.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 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 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 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74조

- 1.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다291347	1068
	제3	390조	
1.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 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 부(적극)	
0	(1)	> 2018. 11. 15. 2016다244491	14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 2018. 11. 29. 2016中266606, 266613 ····· 554	133
3.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과 주유소 등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후 甲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甲의 탈퇴로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5다72385	257
4.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 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은 乙에 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궁한 사례 ▶ 2018. 12. 28. 2016다33196	374
5.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 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 는 방법	57.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 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 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 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中284885 ····· 558	619

공보호수 쪽수

- 6.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7.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 2019. 4. 25. 2018¹**-**287362 ······ 564 1179

제391조

- 1.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 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 [3] 甲 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 보험회사와 화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 회사와 거래하던 丁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93조

- 1.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4)	하는 방법 / 이때 노동 칙적 적극) 및 피해지	동능력상실률에 가 외국인이기	따른 일실	<u></u> 퇴직금을 인정	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 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5]	인지 여부(적극)	적 고통에 대학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	100
	3.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 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의 손해를 배상할 책역 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환지처분 고시일의 다	대른 구획정도 지급하지 여기 보지의 2 등 기급하지 여기 보지의 2 등 기 있는지 여기 청산금 상당역 등 날)	리사업의 / 아니하는 내 소유권을 성 부(적극) / 백) 및 그	니행자가 사유기 용으로 환지기 실시킨 경우, / 이 경우 배선 손해배상청구권	554 시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 세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 상할 손해액(=토지 소유 년의 소멸시효 기산점(=	
*	4.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한을 경험칙상 만 65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사람 또는 육 제까지로 보아 가 되는 피해지	체노동을 주 야 하는지 ' 나의 가동연	으로 생계활동으 여부(원칙적 적 한을 인정하는	2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 극) - 기준	
	5.	(1)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 입은 경우, 이로 인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별 위 손해가 특별한 사건 하는지 여부(적극)	약에 따라 여행 여 발생하는 국 날생한 통상손해 형으로 인한 손	생하는 도중 귀환운송비 해의 범위이 :해라고 하	여행업자의 3 등 추가적인 포함되기 위 더라도 예견가		
		제3	396조					
	1.	(3)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	사유로 참작힐	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2.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하체질적인 소인 또는 경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 여부(원칙적 적극)	내배상액을 산 ² 실병의 위험도 한 사실인정이	정하면서 피 등을 감액 나 비율을	해자 측 귀책 사유로 참작힐 정하는 것이		133
		제3	398조					
	1.	[3]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적극) / 위 계약과 된 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에 포함되는지 여부(설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칙적 적극)	, 계약이행보 간련하여 손해! 여 불법행위 ! 노극) 및 계약 행위의 법적 성	증금은 손형 배상액을 여 또는 부당이 당시 채무 성격과 상관	배배상액의 예 정한 채무불이 득이 성립한 불이행으로 인 없이 위 예정역	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 경우, 그 손해가 예정액 한 손해로 예정한 것은 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	
		제 /	▶ 2018. 12. 27. 2016 104조	다274270, 2742	287		556	364
		7 M 🗖	· • · · · · · · · · · · · · · · · · · ·					

1.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

파	시	사	ಕ್ಷ
		7F	Ų,

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3. 6. 2017¤}5292 ····· 561 839

- 3. [1]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乙 회사에 대한 조세체권자인 국가가 甲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체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甲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체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체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7¹4269862 ······ 563 1048

제406조

- 1.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 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1. 29. 2015中19827 ······ 554 113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 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7¹4247190 ······ 554 140

- 3.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의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상회복의 방법 및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고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 2018. 12. 27. 2017다290057 556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다시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 2018. 12. 28. 2017다265815	378
6.	▶ 2018. 12. 28. 2018다272261 556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86
7.	 ▶ 2019. 1. 17. 2018다260855 1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 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3. 6. 2017마5292 	473 839
8.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 3. 14. 2018다277785, 277792	853
9.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제428조의2

- 1. [1]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甲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 2019. 4. 11. 2018中203715 ····· 563 1051

판	시	사	항

丙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甲 회사의 대리인인 丁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戊가,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甲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14. 2018中282473 ····· 561 855

제428조의3

- 1. (2)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 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 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3] 甲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丙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甲 회사의 대리인인 丁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戊가,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甲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14. 2018中282473 ····· 561 855

제441조

1.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年274703 ······ 559 743

제442조

- 1.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3] 수탁보증인의 주체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체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5]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제443조

- 1. [3]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5]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 2019. 2. 14. 2017中274703 ······ 559 743

판	시	사	ŏ

제450조

- 1.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 2019. 1. 31. 2015¹ + 26009 ······ 558 582

제453조

- 1.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 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 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487조

- 1. [2] 연예인인 甲 등이 연예기획사인 乙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甲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甲 등과 乙 회사, 乙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甲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甲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 ▶ 2019. 1. 17. 2016中256999 ······ 557 445

제492조

- 1. [3]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4]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담보제공 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 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5]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제495조

- 1. (1) 메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 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9. 3. 14. 2018中255648 ····· 561 846

판	시	사	항
---	---	---	---

제498조

- 1. [4]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담보제공 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 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5]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2019. 2. 14. 2017¹7274703 ······ 559 743

제500조

1.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 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8中28273 ····· 553 25

제543조

- 1.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554조

1.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2. 27. 2017¹+290057 ······ 556 370

제555조

- 1.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甲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甲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

,,,	oc 12 02 cmor		_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공소 적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도19308 ····································		335
	제564조		
1.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7다247190 ····································	제척기간 행위가 되	140
	제565조		
1.	 1.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획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중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6도19308 	자'에 해당 용에 따라 를 하는 행 표시한 증 수증자에게 처분하여	335
	제598조		
1.	 [2] 민법상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낙성계약) 및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 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여부(소극) 	량으로 반	
	 (3) 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함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들 사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 중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제 된 사안에서, 위 금전거래를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5다73098 	금전거래가 것인지 문 원을 대여 에 법리오	349
	제607조		
1.	 .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 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8다28273 ····································	시키는 약	25
	제609조		
1.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	지에 대한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中264556 ······ 558 531

제613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615조

- 1.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 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 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 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 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 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 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乙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618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 558 531

2.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공보호수 쪽수

-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¹4291347 563 1068

제623조

- 1.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¹4291347 ······ 563 1068

제 654조

- 1.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

판	시	사	<u>ૄ</u>

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수리비 청구를 배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655조

1. (2)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고용계약) 및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가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 11. 29. 2018¹-1207854 ······ 554 151

제666조

- 1.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 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2018. 11. 29. 2015¹ +19827 ······· 554 113

제667조

1. (1) 메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 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3. 14. 2018年255648 ····· 561 846

제670조

1. (1) 메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 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681조

1.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판	시	사	항

▶ 2018. 11. 29. 2016中48808 ····· 554 128

제683조

1.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 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 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2018. 11. 29. 2016中48808 ····· 554 128

제 688조

1.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 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 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2018. 11. 29. 2016⁻ **1**48808 ······· 554 128

제703조

1. [2] 甲이 乙과 주유소 등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동 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후 甲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甲의 탈퇴로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 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5¹72385 ······ 555 257

제704조

- 1.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 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甲이 乙과 주유소 등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동 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후 甲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甲의 탈퇴로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 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5¹+72385 ······ 555 257

제716조

1.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 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보호수 쪽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甲이 乙과 주유소 등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후 甲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甲의 탈퇴로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2018. 12. 13. 2015¹472385 ······ 555 257

제719조

- 1.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甲이 乙과 주유소 등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후 甲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甲의 탈퇴로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2018. 12. 13. 2015¹472385 ······ 555 257

제732조

- 1.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2019. 4. 25. 2017[‡]21176 ······ 564 1170

제741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2.	 ▶ 2018. 11. 15. 2016다258209 ····································	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 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 이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 설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 2018. 11. 29. 2017다286577 ···································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나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소극)	
*	4.	4.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국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 ▶ 2019. 1. 24. 2016다264556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이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아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원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	 5.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 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택지조성원가에서 액의 산정 방식 /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사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부지 포함한 국공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으로 귀산정 방식이 문제 된 사안에서, 무상귀속부지 중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 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 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 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 중 기존 도로 부분과 수도 부분을 속된 경우,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의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사례	
	6.	 ▶ 2019. 3. 28. 2015다49804 6.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석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 얻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	
	7.	▶ 2019. 4. 11. 2018다291347 ····································	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	1068
		[2]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l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공보호수 쪽수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甲 공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납부액 중 경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甲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도, 위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742조

- 1. [4]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 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 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 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 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 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낙286577 ······ 554 142

제750조

- 1. [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 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 [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 3.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2] 甲이 乙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투약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집중

판	시	사	ŏ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차 내원 후 약 3시간이 지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甲의 혼수
상태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
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8다10562 ······ 555 272

★ 4.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5.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기 중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처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¹4203596 ······ 558 607

6.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2019. 1. 31. 2018中255105 ······ 558 629

- 7.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여부(소극)
 - [4] 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
 - [5] 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위 수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乙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9. 2. 14. 2017年203763 ······· 559 738

★ 8.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 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等 宁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 2019. 2. 21. 2018다248909	781
9.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 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 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10.	(2)	한 사례 ▶ 2019. 2. 28. 2016다271608	803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 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11. 2016다276719	1045
	제7	' 51조	
1.	[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 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 부(적극)	
	[5]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 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다244491	14
2.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 인지 여부(적극)	
3.	(1)	▶ 2018. 11. 29. 2016다266606, 266613	133
	[2]	甲이 乙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투약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자 집중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차 내원 후 약 3시간이 지나 응급실 당직의사가 甲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52
4.	(1)	▶ 2018. 12. 13. 2018다10562	212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 [2] 사망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의 묘사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 [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甲 중위의 아버지 乙이 甲 중위 사망 사건을 소재 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丙 주식회사와 위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과 연출을 맡고 있 는 작가 겸 영화감독 丁을 상대로 영화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甲 중위와 乙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영화의 제작·상영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6. 2018中6721 ····· 561 842

제760조

- 1.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 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 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 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 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 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9, 2, 28, 2016**나**271608 ······ 560 803

제 763조

- 1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 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 부(적극)
 - [5]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 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¹

244491 ······ 553 14

- 2.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하는 방법 /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 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 인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中266606, 266613 ······ 554 133

3.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4.	▶ 2019. 1. 31. 2018다255105 558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 2019. 2. 21. 2018다248909 560	
		제766조	
	1.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배상할 손해액(=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환지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 ▶ 2019. 1. 31. 2018다255105	629
			023
	1.	제837조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620
		▶ 2019. 1. 31. 2018△566	038
	1.	제849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8. 11. 29. 2018만14210	156
		제855조	
	1.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 2018. 11. 6. 2018스32	30
		제864조	
	1.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1. 29. 2018□14210	156
		제865조	
	1.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 자와 자녀 사이에 치색자과계존재화이의 화전파격이 존재하다는 이유마으로 가존과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6. 2018스32 ······ 553	30
2.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1. 29. 2018□14210 ····································	156
	제1001조	
1.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자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306
1.	제1003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6두54275	306
	제1005조	
1.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531
	제1032조	
1.	.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 2018. 11. 9. 2015다75308 ····································	1
	제1034조	
1.	.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1
	▶ 2018. 11. 9. 2015 	1

판 시 사 형

공보호수 쪽수

제1039조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 2018. 11. 9. 2015¹75308 ······ 553 1

제1074조

1.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민 법(구)

제836조의2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837조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사소송법

제24조

- 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제43조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 2019. 1. 4. 2018.	스563				556	389
	제51조						
1.	는데도, 이를 간과히 한 사례	·가지인지 사인 乙이 ¦교의 당시 ·고 본안여	여부(적 甲 학교의 사자능력이 대하여	극) 의 임시이] 인정되 판단한 ⁹	사를 선임해달 지 않아 부적법 원심판단에 법리		951
	제52조						
1.	을 중심으로 계속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창립총회를 열어 조 지 형성한 재산이 위	을 달성하 으로 사회 하여야 하 직체로서의 조직에	기 위하여 적인 활동 는지 여 [!] 니 실체를 귀속되는	공동의 을 하여 쿠(적극) 갖춘 경 지 여부(+	재산을 형성하. 왔다면 이미 그 및 위 사람들여 우, 그 이전부다 원칙적 적극)	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 1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기 어느 시점에 비로소 터 행한 행위나 그때까	
2	▶ 2019. 2. 14. 2018[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559 노국) 및 이러한 법리는	747
2.	비송사건에서도 마친 [2] 甲 외국인학교의 이 서, 위 신청은 甲 학 는데도, 이를 간과히 한 사례	·가지인지 사인 乙이 ¦교의 당서 ·고 본안에	여부(적 甲 학교 사자능력이 대하여	극) 의 임시이] 인정되 판단한 ⁻	사를 선임해달 지 않아 부적법 원심판단에 법리		951
	제76조						
1.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학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 2018. 11. 29. 20	구 당시 : 재심청구	피참가인약 가 허용되	인 재심청 티는지 여	구인이 이미 / 부(원칙적 소극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156
	제82조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기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 ▶ 2019. 2. 28. 2016	여 매도청 경우, 사 신수하도록	구권을 한 업시행자 신청할]사한 이 가 민사소 수 있는>	후 제3자가 매! 노송법 제82조 시 여부(원칙적	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800
	제98조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 ¹ 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² 부담재판을 하면서 취하 ⁶ ▶ 2019. 4. 3. 2018	_ 한 차이가 결과가 발· 겨야 할 조	있어 쌍 생한다고 치	방 상소 인정되는	기각과 함께 싱 · 경우, 법원이	소비용을 각자 부담으	977
	제99조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P한 판결이	세 대해 생) 방이 각	패소 부분에 /	상소한 사건에서 각 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면서 취하여야 할 조치 ▶ 2019. 4. 3. 2018다271657	977
	1.	제100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폐소 부분에 상소한 사건에서 각 당 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 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재판을 하면서 취하여야 할 조치 ▶ 2019. 4. 3. 2018다271657	977
	1.	제136조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 2018. 11. 9. 2015다75308	1
*	2.	제142조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 2019. 2. 21. 2017후2819	830
	1.	제183조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2018. 11. 29. 2018도13377	253
		제202조	
	1.	 [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5]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다244491 	14
	2.	● 2018. 11. 15. 2010년244491 ··································	14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

여부(원칙적 적극)

인지 여부(적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2 018. 11. 29. 2	2016EF266606	5 266613	3			554	133
3.	[2]	감정인의 감정 결과	과의 증명력						100
	(-)	▶ 2018. 12. 17. 2							286
4.	[1]	의료과오로 인한 경하기 위한 증명 해자)		. – .		– .		. –	
	(3)	문제 된 증상 발생 접사실들을 증명함 여부(적극) 및 위 여부(소극)	t으로써 그 와 같은 경우	증상이 우에도 9	- 의료 과실 시사에게	실에 기한 무과실의	것이라고 추정할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수 있는지	720
5	[9]	▶ 2019. 2. 14. 20 감정인의 감정 결3		•••••	•••••	••••••		559	738
J.	(4)	► 2019. 3. 14. 20						561	846
	제2	208조							
1.	(2)	법원의 판결에 당시지 않더라도 판결 판단누락이 있다고	이유의 전빈 할 수 있는	적인 취 지 여부	지로 그 (소극)	주장의 인	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T 00
2.	(3)	▶ 2019. 1. 31. 20 당사자가 주장한 / 않지만 판결 결과(부(소극)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약	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	되어 있지	598
		► 2019. 1. 31. 20	017다289903					558	622
	제2	211조							
1.	[1]	당사자의 신청에 다이나 기재, 그 밖에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세 등이 동일인임							
		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	고 주장	하면서 축	주민등록번	호를 추가 기재히	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히 판결의 원고가 동 치에 민사소송법에	일인이라는	점에 관	한 소명이	없으므로	,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	
		► 2018. 11. 21. 2						•	111
	제2	216조							
1.	-	-··- !자가 사해행위취소	. 및 원상회·	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	의 말소를 청구히	 여 승소판	
	결이 수의	확정된 경우, 수 [.] 자를 상대로 원상 [.] 앞으로 직접 소유 ▶ 2018. 12. 28. 2	익자 명의 등 회복청구권을 권이전등기점	등기를 밀 : 행사하 절차를 ㅇ	발소하는 ·여 가액▷ 행할 것·	것이 불가 배상을 청 ^그 을 청구할	능하게 되었다고 구하거나 원물반환 수 있는지 여부(a	하여 다시 산으로서 채 소극)	378
2.	재소 인 : 어 : (적:	판결에 의한 채권(((再訴)에 소의 이역 피고가 전소의 변론 항변할 수 있는지 여극) / 후소가 전소	익이 있는지 ·종결 후에 ' 여부(적극) ·판결이 확건	여부(적 발생한 변 및 이는 병된 후	극) / 시 변제, 상계 소멸시효 10년이 2	효중단을 ∥, 면제 등 : 완성의 ⁷ 지나 제기5	위한 후소 절차여 과 같은 채권소말 경우에도 마찬가지 되었더라도 법원은	서 채무자 사유를 들 인지 여부 - 채무자인	
	-	L의 항변에 따라 원 lot 하는지 여부(워			요 완성	으도 소멸전	아었근시에 관한	존안 퐌난글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3.	▶ 2019. 1. 17. 2018다24349 557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5다244432	463 728
1.	제218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62
2.	▶ 2019. 1. 17. 2018 다 24349 557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5 다 244432	463728
1.	제220조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체무자인 甲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7다21176	1170
1.	제233조 [1]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170
	▶ 2019. 2. 14. 2015 中255258 559	731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 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쏙수
	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17. 2018다24349	463
	제249조	
1.	[2] 특허권침해금지의 소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 2019. 1. 31. 2016마5698	593
	제250조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3. 14. 2018다281159	1031
	제251조	
1.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 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5다244432	728
	제288조	
1.	[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 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2018. 11. 15. 2016다244491	14
2.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14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 2018. 11. 29. 2016다266606, 266613	133
	▶ 2018. 11. 29. 2018中200730	148
4.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2018. 12. 13. 2018다10562	272
5.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6.	▶ 2018. 12. 27. 2016다266736 ······ 556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	358
	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해자)	
	[3]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 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 ¹ 4203763 ······ 559	738
7.	(4)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 2019. 2. 14. 2018中264628	747
8.	(2)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 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	
		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	
		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	
		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	
		였는데, 乙이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장	
		비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장비의 고장이 Z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甲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임대인인 甲에게 乙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甲이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甲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 ¹ 291347 ····· 563	1068
	제3	39조	
1.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2019. 3. 14. 2018中255648	846
	-	-23조	
1.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6中215127	598
2.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 2019. 1. 31. 2017다289903 ······ 558	622
	제4	·32조	
1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٠.	(0)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2	여부(원칙적 적극)	
	[5]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 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공보호수 쪽수

- ▶ 2018. 11. 15. 2016⁻⁻ 244491 ······ 553 14
- 2.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 인지 여부(적극)
 - ▶ 2018. 11. 29. 2016⁻

 \$\delta\$ 2018. 2016 | 266606, 266613 | 554 | 133

제449조

1.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 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21. 2018⊐636 ····· 554 111

부칙(2015. 12. 1.) 제1조

- 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 2019. 4. 10. 2017**□**}6337 ······ 563 1033

부칙(2015. 12. 1.) 제2조

- 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 2019. 4. 10. 2017¤}6337 ······ 563 1033

공보호수 쪽수

민사소송법(구)

제52조 (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62조 (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64조 (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 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8. 12. 13. 2016⁻⁻1210849, 210856 ······· 555 271

민사조정법

제28조

- 1.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 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7¹**-**21176 ······· 564 1170

제29조

- 1.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 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 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 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 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 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 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 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7[‡]21176 ······ 564 1170

민사집행법

제26조

- 1. [1] 외국중재판정 성립 이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 단계에서 외국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8. 11. 29. 2016中18753 ······ 554 116

- 2. [2] 외국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2항 (b)호를 적용 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8. 12. 13. 2016中49931 ····· 555 264

제31조

- 1.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 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 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및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적극)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 으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 2019. 1. 31. 2015다26009 ······ 558 582

제44조

- 1.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 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제91조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공보호수 쪽수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메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2018. 11. 29. 2017¹

 2018. 11. 29. 2017¹

 3017 142

제135조

-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年286577 ······ 554 142

제145조

-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희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희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제148조

-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

공보호수 쪽수

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151조

- 1.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乙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甲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丙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신용보증기금과 乙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丙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한 사례

▶ 2019. 3. 6. 2017中5292 ····· 561 839

제154조

- 1.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乙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甲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丙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乙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丙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 2019. 3. 6. 2017**□**}5292 ······ 561 839

제223조

1.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인지 여부(적극)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 으나, 승계집행문의 부여ㆍ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2019. 1. 31. 2015¹

2019. 1. 31. 2015¹

558 582

제229조

1.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 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 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및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적극)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 으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2019. 1. 31. 2015¹**-**26009 ······ 558 582

제246조

- 1.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혐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 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 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5¹450286 556 345

제248조

1. [2] 연예인인 甲 등이 연예기획사인 乙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 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甲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 송사들이 '甲 등과 乙 회사, 乙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 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 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甲 등이고 출연료채권 이 甲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 2.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 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 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 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 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 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 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 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 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극) 및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판	시	사	ઠ્

공보호수 쪽수

인지 여부(적극)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2019. 1. 31. 2015¹

2019. 1. 31. 2015¹

558 582

제251조

1. [2]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91조

1.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 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5¹426009 ······ 558 582

제297조

1.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5¹

2019. 1. 31. 2015¹

558 582

제300조

1. [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甲 중위의 아버지 乙이 甲 중위 사망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丙 주식회사와 위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과 연출을 맡고 있는 작가 겸 영화감독 丁을 상대로 영화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甲 중위와 乙의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영화의 제작·상영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6. 2018¹ 6721 561 842

2.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영업비 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불복 방법

▶ 2019. 3. 14. 2018中7100 ······ 561 859

공보호수 쪽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1.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 2018. 12. 27. 2015¹

556 345

법원조직법

제28조

- 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2019. 4. 10. 2017¤}6337 ····· 563 1033

제28조의4

- 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2019. 4. 10. 2017¤}6337 ····· 563 1033

제32조

- 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판	시	사	ŏ

공보호수 쪽수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2019. 4. 10. 2017¤}6337 ····· 563 1033

법 인 세 법

제3조

제93조

- 1. [1]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甲 주식회사가 형가리에 소재한 乙 외국법인과 외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 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정수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乙 법인의 네덜란드 모회사인 丙외국법인이라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15. 2017두33008 ······ 553 68

- 2. [1]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 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8<u></u> 538376 ······ 554 217

공보호수 쪽수

- 4.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징수·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제98조

- 1. [1]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甲 주식회사가 형가리에 소재한 乙 외국법인과 외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 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乙 법인의 네덜란드 모회사인 丙외국법인이라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 [1] '대한민국 정부와 형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 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8**〒**38376 ······ 554 217

법 인 세 법(구)

제2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27. 2016-42883 ······ 556 409

제52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이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의 주식 과 甲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 에 甲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乙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 은 乙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 로 합의를 한 후. 乙이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보유한 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 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甲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과 위 주식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甲 회사의 해 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乙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에게 종합소 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회사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 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8. 12. 28. 2017<u></u> - 47519 ······ 556 413

제93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27. 2016-742883 ······ 556 409
- 2.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 당하는지 여부(소극)
 -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 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징수 ·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 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파 시 사 핬 공보호수 쪽수

▶ 2019. 4. 23. 2017두48482 ······ 564 1195

제93조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 당하는지 여부(소극)
 -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 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정수를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징수 ·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 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 2019. 4. 23. 2017**두**48482 ······ 564 1195

제98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27, 2016**두**42883 ······ 556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 1.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 당하는지 여부(소극)
 -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 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장수 법인세 등을 정수ㆍ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 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 2019. 4. 23. 2017 - 564 1195

공보호수 쪽수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이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의 주식과 甲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甲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乙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은 乙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乙이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보유한 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甲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과 위 주식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甲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乙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에게 종합소 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회사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8. 12. 28. 2017두47519 ····· 556 413

제132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국내조선사인 甲 주식회사 등과 외국선주사인 乙 외국법인 등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乙 법인 등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한 선박대금 등의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乙 법인 등에 선수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원천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정수 법인세 등을 징수·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한 사례

병 역 법

제88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2018. 11. 29. 2016 至 11841
 554 229

공보호수 쪽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구)

제32조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9. 2016-551610 ······· 553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1.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 **▶** 2019. 4. 25. 2018中212993 ····· 564 1176

제35조

- 1.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 **▶** 2019. 4. 25. 2018中212993 ······ 564 1176

부칙(2011. 7. 25.) 제1조

- 1.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2조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2.	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5다247257	
1.	제22조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5다247257	4
1.	제23조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5다247257	4
1.	제30조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5다247257	4
	제34조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5다247257 553	4
1.	제35조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 11. 15. 2015다247257	4
2.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 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 2019. 4. 25. 2018中212993 ······ 564 117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5조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5[‡]-247257 ······ 553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60662 ······ 557 505

제40조

- 1.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 [3]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 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 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2019. 1. 17. 2015-60662 ······ 557 505

부가가치세법(구)

제12조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60662 ······ 557 5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1.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 2019. 1. 17.	2015두60662				557	505
	제81조						
1.	있는 경우, 비교 업에 해당하는 그 용역 공급에 항의 규정을 유 매입세액을 가려	사세사업에 안년 용역의 공급과 대한 대가로 추 적용할 수 ქ내는 방법	문되는 매 · 관련하여 볼 수 없 있는지 여	입세액을 여 거래상 는 경우, 여부(소극	가려내는 방 대방 등으로 [.] 구 부가가치) 및 이 경우	분할 수 없는 메입세액이 '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 부터 돈을 받은 경우로서 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 -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505
	제105조						
1.	한 절차에 따라 의무가 있는지 (수출자에게 되 여부(소극)	부돌려 보	내는 경우	P, 그에 대한	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559	765
		부가	가치서	║법 시	행령(구)		
	제33조 (2013. 2	2. 15. 대통령형	령 제243	59ㅎㄹ :	개정되기 저의	의 것)	
1.	[1] 자금융통 등이 대상 자체가 되	은행업자 등의 지 않는 비과서	개입 없 사업인지	이 개별적 시 여부(적	으로 이루어 극)	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557	505
	[1] 자금융통 등이 대상 자체가 되는 2019. 1. 17. 제 61조 (2013. 2 [3] 과세사업과 비교 있는 경우, 비교 업에 해당하는 그 용역 공급에 항의 규정을 유매입세액을 가려	은행업자 등의 지 않는 비과서 2015두60662 2. 15. 대통령 사세사업에 공동 사세사업에 안동 용역의 공급과 대한 대가로 추 적용할 수 내내는 방법	개입 없	이 개별적 이 여부(조 59호로 : 용되어 실 입세액을 여 거래상 는 경우, 여부(소극	으로 이루어: 극) 개정되기 전 ⁹ 기귀속을 구- 가려내는 방 대방 등으로 ¹ 구 부가가치) 및 이 경우	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557	
1.	[1] 자금융통 등이 대상 자체가 되는 ▶ 2019. 1. 17. 제 61조 (2013. 2 [3] 과세사업과 비교 있는 경우, 비교업에 해당하는 그 용역 공급에 항의 규정을 유매입세액을 가려 ▶ 2019. 1. 17. 제 71조 (2013. 6 [2] 품질, 규격, 수단한 절차에 따라의무가 있는지	은행업자 등의지 않는 비과서 2015두60662 2. 15. 대통령 사세사업에 공동 사세사업에 안동 용역의 공급과 대한 대가로 추 적용할 수 대는 방법 2015두60662 3. 28. 대통령 당 등이 원래의 수출자에게 되어부(소극)	개입 없	이 개별적 이 여부(조 등9호로 7 용되어 실 입세액을 여 거래상 는 경우, 여부(소극 등3호로 주 명세와 내는 경우	으로 이루어 극)	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557 의 것) 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부터 돈을 받은 경우로서 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 -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5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등산등기법			판데공모	제553호~제5) 04 .5
판 /	시 사	ठॅु}		공보호수	쪽수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적으로 ▶ 2019. 1. 31. 2017다228618 ·					614
	부동산등	기법			
제88조					
1.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	할 수 있는	시 여부(소극) 및	및 이는 현행		
► 2018. 11. 29. 2018 ¹ +200730				554	148
부동산소유	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 -	ᄪᆍᆌ		_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구)

제5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3¹ 14217 ····· 558 578

	판 시 사	ठे\-	공보호수	쪽수
1.	제7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르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 ▶ 2019. 1. 31. 2013다14217 ····································	결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겨부(소극)		578
1.	제8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텔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 ▶ 2019. 1. 31. 2013다14217 ····································	결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෦부(소극)		578
1.	제 9 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텔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 ▶ 2019. 1. 31. 2013다14217 ····································	결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셔부(소극)		578
1.	제11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 ▶ 2019. 1. 31. 2013다14217 ····································	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녀부(소극)		578
1.	제12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 ▶ 2019. 1. 31. 2013다14217 ····································	결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෦부(소극)		578
1.	제13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 ▶ 2019. 1. 31. 2013다14217 ····································	결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여부(소극)		578
1.	제14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 .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 ▶ 2019. 1. 31. 2013다14217 ····································	결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෦부(소극)		578
	제 15조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9호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019. 1. 31. 2013¹¹4217 ······ 558 578

제4조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

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1.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제11조

- 1.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1.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 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 는 방법
 -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0조

- 1.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영업비 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불복 방법

제11조

1.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 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 는 방법

공보호수 쪽수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中284885 ······ 558 619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1.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25. 2016中5908 ······ 562 95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1. [2]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고용계약) 및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가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 [4] 사립대학교의 교수인 甲이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8¹4-207854 ······ 554 1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 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2019. 3. 28. 2016-43176 ······ 562 986

		판	시	사	항	Ş	공보호수	쪽수
1.	제7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 2019. 3. 28. 201	난계인 '사업 Ⅰ지' 판단하	시행자의 는 방법	자유로운	-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히	는 범	986
1.	제1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명령을 하는 경우, 그 현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 2019. 3. 28. 201	난계인 '사업 Ⅰ지' 판단하	시행자의 는 방법	자유로운	-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히	는 범	986
1.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 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 2019. 3. 28. 201	난계인 '사업 Ⅰ지' 판단하	시행자의 는 방법	자유로운	-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히	는 범	986
	제13조 [1] 甲 광역자치단체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법이 개정되어 법어 산정한 재정지원실시협약에서 정한을 미치는 경우'에 한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다른 제정지원금에 다른 제정지원에 다른 제정지원리에 대한 민당령을 하는 경우, 그 한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취우 협약당 2나 실제로 의 터널 민 인세율이 ' 금액을 지급 개당한다고 계당한다고 계당한다고 1약을 체결 의 지급을 간투자법 기 간투자법 기 간투자법 기 간투자법 기	사자 간의 통행료 간투자사임 인하되자 급한 사안이 등의 변경 본 원심판한 당사자 구하는 경 시행자의 는 방법	협의를 조정이 이 업 실시협 甲 자치단 네 해당 상 에 해당 산단을 수는 가 공법성 우, 수소 자유로운	통해 통행료를 부어지지 못한약을 체결하였는데가 법인세월 개정에 하고 '사업의 당한 사례를 당사자소송에 범원이 심리 · · · · · · · · · · · · · · · · · ·	· 조정하고, 통형한 경우 보조금을 보는데, 2002년에 한 효과를 반따른 법인세율 역수익성에 중대한 비의하여 그 실판단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저해하지 아니히	료 조 - 중감 법인 반영하 인하가 : 영향 시협약 시협약 감독 는 범	677
1.	▶ 2019. 3. 28. 201 제1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명령을 하는 경우, 그 현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 2019. 3. 28. 201	간투자법 걔 난계인 '사업 [지' 판단하	세45조 제 시행자의 는 방법	1항에 따 자유로운	라 주무관청이 - 경영활동을	사업시행자에게 저해하지 아니히	감독 는 범	
1.	제 2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명령을 하는 경우, 그 현 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 2019. 3. 28. 201	난계인 '사업 Ⅰ지' 판단하	시행자의 는 방법	자유로운	-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히	는 범	986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제45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 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2019. 3. 28. 2016-543176 ······· 562 986

제53조

- 1. [1] 甲 광역자치단체가 乙 유한회사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통행료를 조정하고, 통행료 조 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증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에 법인 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율이 인하되자 甲 자치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하 여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 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번 시행령

제35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 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국민건강보혐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혐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구)

제2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 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 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적 적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2. 11. 2.) 제2조

1.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 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 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적 적극)

▶ 2019. 2. 14. 2015¹4240195 ······ 559 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조의2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 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 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적 적극)

▶ 2019. 2. 14. 2015¹

2019. 2019.

제40조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 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 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적 적극)

> 2019. 2. 14. 2015다240195 ······ 559 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 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 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공보호수 쪽수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 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甲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사례

▶ 2018. 12. 27. 2018두46377 ······ 556 406

제36조

-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25. 2015<u>+</u>39897 ······ 564 1181

제37조

1.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甲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사례

제41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中258209 ····· 553 20

제90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03조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

| 판 | 시 | 사 | 힝 |
|---|---|---|---|
| | | | |

공보호수 쪽수

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 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제106조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25. 2015-539897 ······ 564 1181

제111조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25. 2015-539897 ······ 564 1181

제112조

-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제113조

-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1.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甲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사례

▶ 2018. 12. 27. 2018<u></u> 556 406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中258209 ····· 553 20

상 범

제57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 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 12. 13. 2018-51485 ······ 555 299

제114조

- 1.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甲 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 보험회사와 화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 회사와 거래하던 丁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테 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5[‡] 246186 ······ 555 260

제115조

- 1.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 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甲 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 보험회사와 화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 회사와 거래하던 丁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데 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 시 시 | ㅏ 항 |
|-------|-----|
|-------|-----|

공보호수 쪽수

제129조

- 1.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 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 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68조의2

- 1.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68조의3

- 1.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35조

- 1.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 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36조

- 1.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 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2.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

공보호수 쪽수

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7**日**21176 ······ 564 1170

제337조

1.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 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2.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7¹+21176 ······ 564 1170

제352조

1.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쪽수 |
|----|---|-----|
| | ▶ 2019. 2. 14. 2015年255258 | 731 |
| 1. | 제353조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 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2019. 2. 14. 2015다255258 | 731 |
| 1. | 제360조의2 [2] 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은행과 丙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1. 29. 2017다35717 554 | 138 |
| 1. | 제360조의5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 액을 결정하는 방법 ▶ 2018. 12. 17. 2016마272 | 286 |
| 1. | 제360조의22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 액을 결정하는 방법 ▶ 2018. 12. 17. 2016마272 | 286 |
| 1. | 제374조의2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 액을 결정하는 방법 ▶ 2018. 12. 17. 2016마272 | 286 |
| 1. | 제376조 [1]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2019. 2. 14. 2015다255258 | 731 |
| | 제403조 | |
| 1. |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소 계소 주 田 유해과 표 즉시회사가 근시교회의 양리하여 표 회사가 田 유해의 | |

공보호수 쪽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522조의3

- 1.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 액을 결정하는 방법
 -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 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638조의3

- 1.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 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 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 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6]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적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丙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甲 회사의 위손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乙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651조

- 1.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 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 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 [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 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甲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 험금을 수렁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乙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 에 이른다고 한 사례

제652조

1.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 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 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 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657조

1.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 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 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 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663조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3. 28. 2016¹+211224 ······ 562 959

제719조

- 1. [3] 甲 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 보험회사와 화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 회사와 거래하던 丁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데 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4] 책임보혐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5¹ +246186 ······ 555 260

제720조

- 1.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 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 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 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2019. 1. 17. 2016¹

 2017. 2016¹

 2019. 1. 17. 2016¹

제724조

- 1.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 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 [2] 甲(사고 당시 만 4세)이 乙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甲과 그 부모가 乙 및 乙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 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 앙회는 공제계약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 과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 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1. 17. 2018¹+245702 ······ 557 466

- 2.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 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 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 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 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2019. 4. 11. 2018年300708 ······ 563 1072

제 737조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채결한 경우, 보험금 편 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 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 [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 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보호수 쪽수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뛰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乙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乙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 2019. 4. 3. 2014⊊2754 ····· 562 1026

제739조의2

- 1.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 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 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 [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甲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乙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乙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乙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제798조

- 1.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적극)
 -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 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 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4. 11. 2016¹7276719 ······ 563 1045

제814조

1.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8中244761 ······ 555 283

제852조

1.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 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랜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 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11. 2016¹

276719 ······ 563 1045

제861조

1.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

공보호수 쪽수

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 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 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 법(구)

제811조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40941 ······ 555 303

2.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6두54275 ······ 555 306

3.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4. 11. 2017-57899 ······ 563 1122

제3조

1.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3조의2

1. [1]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쪽수 |
|----|--|-------------|
| 2. |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 제4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두1110 | |
| | 제4조 | |
| 1.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 |
| 2. | ▶ 2018. 12. 13. 2015두40941 555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4. 11. 2017두57899 | 303
1122 |
| | 제42조 | |
| 1.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두40941 555 | 303 |
| | 제42조의2 | |
| 1.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 2018 12 13 2015 두 40941 ······ 555 | 303 |

제42조의3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

공보호수 쪽수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5조의5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40941 ······ 555 303

제60조

- 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 준으로 정한 취지
 -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 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63조

- 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 준으로 정한 취지
 -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 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8. 12. 17. 2016中272 ······ 555 286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 파 | 시 | 사 | ත් |
|----|---|----|----|
| 44 | | ^r | Q, |

공보호수 쪽수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6두54275 ······ 555 306

제2조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 설립 전 발기 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 - 40941 ······ 555 303

제2조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 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 등이 같은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丙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 아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 4. 11. 2017**〒**57899 ······ 563 1122

제3조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 제4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두**1110 ······· 554 202

제3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2018. 12. 13. 2016-54275 ······ 555 306

| 판 | 시 | 사 | 항 |
|---|---|---|---|
| | | | |

공보호수 쪽수

| 제13조 | (2013 3 | 23 | 버류 | 제11690호로 | 게저되기 | 저이 | ひもり |
|-------|----------|-------|----|----------|------|----|------------|
| ハロコンニ | (2013. 3 | . 23. | 법률 | 제미1090오도 | 개성되기 | 신의 | ノ ハ |

- 1.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2018. 12. 13. 2016-54275 ······ 555 306

제27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 28조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2018. 11. 29. 2016<u>-</u>1110 ······ 554 202

제 28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33조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4조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 시 | 사 | ठ्ठे | 공보호수 | 쪽수 |
|----|---|--|---|---|------|
| | ▶ 2018. 12. 13. 2015두40941 ··· | | | 555 | 303 |
| 1. | 제35조 (2007. 12. 31. 법률 제8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서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두40941 ···· | 터 제42조까
· 규율하면서
 에서 증여세
 법 제2조 제
⁽) | 지 정해진 개별 증여
증여세 부과의 범위
부과대상이나 과세
 3항의 증여의 개념여 | 위와 한계를 설정한
범위에서 제외된 거
게 해당한다면 증여 | 303 |
| | 제35조 (2013. 1. 1. 법률 제1160 |)9 호로 개정. | 되기 전의 것) | | |
| 1. |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기 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리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밀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들소극) | ⊦치를 적절히
대조건으로 ⊅
사유가 있었
날하는 '거래의 | 반영하여 거래를 한
 대를 하는 것이 합
 던 경우, 구 상속세
 관행상 정당한 사 | 는다고 믿을 만한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
및 증여세법 제35
유가 있다고 볼 수 | |
| | [3]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화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아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사채를 취득하
수인 丙에게
하여 중여세를
나나 과세관청
140조 등을
제42조 제1학 | 라여 위 사채에서 분
곧바로 메도하였고,
늘 신고·납부하였다;
이 이를 거부한 사인
적용하여 증여세를 ;
항 제3호에 기해서도 | 리된 신주인수권을
丙이 신주인수권의
가 납부한 증여세의
난에서, 제반 사정에
과세할 수 없고, 나
. 과세할 수 없다고 | |
| | ▶ 2019. 4. 11. 2017두57899 ····· | ••••• | | 563 | 1122 |
| | 제36조 (2007. 12. 31. 법률 제88 | 328호로 개정 | 성되기 전의 것) | | |
| 1.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서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규율하면서
 에서 증여세
 법 제2조 제
) | 증여세 부과의 범위
부과대상이나 과세
[3항의 증여의 개념이 | 위와 한계를 설정한
범위에서 제외된 거
게 해당한다면 증여 | |
| | ▶ 2018. 12. 13. 2015두40941 ··· | ••••• | | 555 | 303 |
| 1. | 제37조 (2007. 12. 31. 법률 제8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대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서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 12. 13. 2015두40941 ··· | 터 제42조까
· 규율하면서
 에서 증여세
 법 제2조 제 | 지 정해진 개별 증여
증여세 부과의 범위
부과대상이나 과세
 3항의 증여의 개념여 | 귀와 한계를 설정한
범위에서 제외된 거
게 해당한다면 증여 | 303 |
| 1. | 제38조 (2007. 12. 31. 법률 제8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 | 터 제42조까
- 규율하면서 | 지 정해진 개별 증여
증여세 부과의 범위 | 귀와 한계를 설정한 | |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 | 판 | 시 | 사 | 항 | 공보호수 | 쪽수 |
|----|--|---|--|---|------|------|
| |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
▶ 2018. 12. 13. 2015두40 | | | | 555 | 303 |
| 1. |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 | 33조부터
행위를 규
위 규정에
등 증여세법
부(소극) | 제42조까
}율하면서
서 증여세
제2조 저 | 지 정해진
증여세 투
부과대상여
 3항의 증여 | , | 303 |
| 1. |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 | 33조부터
행위를 규
위 규정에
: 증여세법
부(소극) | 제42조까
}율하면서
서 증여세
제2조 저 | 지 정해진
증여세 투
부과대상여
 3항의 증여 | • | 303 |
| 1. |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 | 33조부터
행위를 규
위 규정에
: 증여세법
부(소극) | 제42조까
}율하면서
서 증여세
제2조 저 | 지 정해진
증여세 투
부과대상여
 3항의 증여 | • | 303 |
| 1. |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 | 33조부터
행위를 규
위 규정에
: 증여세법
부(소극) | 제42조까
}율하면서
서 증여세
제2조 저 | 지 정해진
증여세 투
부과대상여
 3항의 증여 | , | 303 |
| 1. |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
아가 같은 법 제35조 제2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려 | 대로 신주인
수권부사치
최대주주인
 에 관하여
 하였으나
 세법 제40
 항 및 제4 | 인수권부사
 를 취득하
 丙에게
 증여세를
 과세관청
 3조 등을
 12조 제1학 | 채를 발행하여 위 사
곧바로 매!
는 신고·납
이 이를 거
적용하여 출
항 제3호에 | | 1122 |
| 1. | 제 41 조 (2007. 12. 31. 법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 | | | , | |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 판 | 시 | 사 | ે |
|---|---|---|----------|
| | | | |

공보호수 쪽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두**40941 ······· 555 303

제41조의 3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 설립 전 발기 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5 - 40941 ······ 555 303

제41조의4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1조의5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8. 12. 13. 2015**두**40941 ······ 555 303

제 **42**조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 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 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8. 12. 13. 2015**두**40941 ······ 555 303

제42조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 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 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 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 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공보호수 쪽수

소극)

[3]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체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 등이 같은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체를 취득하여 위 사체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丙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 아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 4, 11. 2017**-**57899 ······ 563 1122

제45조의2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 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57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13. 2016 - 54275 ······ 555 306

제63조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이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의 주식과 甲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甲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乙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은 乙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乙이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보유한 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甲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과 위 주식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甲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乙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에게 종합소 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회사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8. 12. 28. 2017두47519 ······ 556 4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1. [2]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두1110 ······ 554 202

공보호수 쪽수

제54조

- 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 준으로 정한 취지
 -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 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8. 12. 17. 2016¹ 272 ······ 555 286

제56조

- 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 준으로 정한 취지
 -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 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8. 12. 17. 2016[□]+272 ······ 555 2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조의2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1110 ······ 554 202

상 표 법

제34조

1. [1]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공보호수 쪽수

[2] 선등록서비스표 1 " **DETAX mall** 다텍스 몰 ", 선등록서비스표 2

" storage 스토리지 ", 선등록서비스표 3 " **apmluxe**"의 A.P.M

서비스표권자 π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 APM24"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0 2016 1276

▶ 2018. 11. 9. 2016 ₹ 1376 ······ 553 76

- 2.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 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 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REVANESSE**"의 상표권자 甲 외국

회사가 확인대상표장 "Reviness"의 사용권자 Z 주식회사를 상

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

사의 등록상표 " **Reviness** "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乙 회사 리바이네스

의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9. 4. 3. 2018 享 11698
 562 1002

제121조

1.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

공보호수 쪽수

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 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REVANESSE**"의 상표권자 甲 외국

회사가 확인대상표장 "**Reviness**"의 사용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

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

사의 등록상표 " **Reviness** "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乙 회사 리바이네스

의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 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2019. 4. 3. 2018₹11698 562 1002

상 표 법(구)

제7조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 선등록서비스표 1 "**DETAX mall** 다텍스 볼 ", 선등록서비스표 2

"storage 스토리지", 선등록서비스표 3 "apmluxe"의 A.P.M

서비스표권자 π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 APM24 "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 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 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9. 2016<u>₹</u>1376 ······ 553 76

공보호수 쪽수

소 년 법

제67조

- 1. [3]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 [4]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에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7\(\superset\)62587 \(\dots\) 559 755

부칙(2018. 9. 18.) 제2조

- 1. [3]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 [4]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 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에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2. 14. 2017**두**62587 ······ 559 755

소 년 법(구)

제60조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3]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제67조 (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소 득 세 법

제88조

-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
 - **▶** 2018. 11. 9. 2015 ₹41630 ····· 553 62

공보호수 쪽수

소 득 세 법(구)

제1조의2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 결 정하는 방법
 - [4] 프로축구선수인 甲이 일본의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에서 활동하면서 지급 받은 연봉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종 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일본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

▶ 2019. 3. 14. 2018 - 60847 ····· 561 876

제2조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제17조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 러한 소득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적극)

제88조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

제96조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甲이 토지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甲의 아버지인 乙이 토지 1/2 지분과 지상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같은 날 丙 등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甲이 자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과 乙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丙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 2019. 1. 31. 2018두57452 ······ 558 695

제**98조**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

▶ 2018. 11. 9. 2015-741630 ······ 553 62

제100조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甲이 토지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甲의 아버지인 乙이 토지 1/2 지분과 지상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같은 날 丙 등에 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甲이 자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과 乙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丙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57452 ······ 558 695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2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 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 결 정하는 방법
 - [4] 프로축구선수인 甲이 일본의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에서 활동하면서 지급 받은 연봉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종 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과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일본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

▶ 2019. 3. 14. 2018-60847 ······ 561 876

제162조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 2018. 11. 9. 2015**〒**41630 ······ 553 62

제166조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甲이 토지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甲의 아버지인 乙이 토지 1/2 지분과 지상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같은 날 丙 등에 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甲이 자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과 乙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 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丙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두57452 ······ 558 69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2018. 12. 27. 2015中50286 ····· 556 345

2.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 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 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中300708 ······ 563 107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1.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 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 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 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 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 고 · 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 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

공보호수 쪽수

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 도 법

제60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 산 업 법

제2조

1.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7. 2014**〒**11601 ······ 556 391

제8조

1.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 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7. 2014**두**11601 ······· 556 391

공보호수 쪽수

- 2.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 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피해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대상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데, 甲의 신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 등록이 위 고시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이를 예측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 합의의 해석상 甲의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284400 ····· 563 1062

제14조

- 1.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 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피해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대상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데, 甲의 신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 등록이 위 고시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이를 예측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 합의의 해석상 甲의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中284400 ······ 563 1062

제16조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 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 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7. 2014두11601 ······ 556 391

- 2.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 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 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 장에서 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 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 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피해 예 측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대상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데, 甲 의 신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 등록이 위 고시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예측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 합의의 해석상 甲의 신 어업권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1. 2018中284400 ······ 563 1062

제41조

1.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8F-284400 ····· 563 1062

제47조

1.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8日284400 ····· 563 1062

수산업법 시행령

제 69조

1.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 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 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93조

1.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침가물의 판매했위 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 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도6329 ····· 554 223

식품위생법(구)

제13조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침가물의 판매행위 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 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2]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 항의 죄를 범하고, 그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동종의 죄 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 를 범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 격'의 의미(=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

▶ 2018, 11, 29, 2016도6329 ······ 554 223

제94조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 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첚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 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2]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 항의 죄를 범하고, 그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공보호수 쪽수

자가 판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 격'의 의미(=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

신 탁 법

제22조

1. (2)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乙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甲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甲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당해세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고 한 사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

▶ 2019. 4. 11. 2017¹

269862 ······ 563 1048

제4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 2019. 2. 21. 2014**두**12697 ······ 560 811

제13조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 2019. 2. 21. 2014**두**12697 ······ 560 811

제13조의2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 2019. 2. 21. 2014**두**12697 ······ 560 81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

공보호수 쪽수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 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 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 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6-50488 ······ 558 68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1.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원심판단을 수공한 사례
 - [6]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적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丙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甲 회사의 위손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乙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9. 1. 17. 2016¹+277200 ······ 557 449

제5조

- 1.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공보호수 쪽수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 을 수긍한 사례

[3]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궁한 사례

▶ 2019. 1. 17. 2016¹4277200 ······ 557 449

- 2.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 [2] 甲 공인중개사협회와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협회 및 소속 회원'으로 하는 전 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乙 회사가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계승하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보통약관 조항과 '이 보험은 사고나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고나 손해가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조항을 두었는데, 특별약관조항이 보통약관조항에 우선 적용되어 피보험자의 임직원 또한 특별약관조항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는 보통약관조항이 적용되고,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특별약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도 특별약관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14. 2018다260930 ······ 561 849

약 사 법

제20조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 23조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공보호수 쪽수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50조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93조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94조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제95조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약 사 법(구)

제20조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93조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1]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 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4조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 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7두47137 ······ 557 491

제50조

-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 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 엑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업체에 대해 재정지 원심사를 하여 운영개선지원금을 산정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원칙적 적극) /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운영개선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에 서 운수사업자의 적자액을 반영하도록 정한 경우, 운영개선지원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금액에 비례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1. 17. 2017두47137 ······· 557 4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 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7두47137 ······ 557 4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 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두49642 ······ 564 1189

제4조

1.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 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 - 49642 ······ 564 1189

외국환거래법

제1조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3조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공보호수 쪽수

제18조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29조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2.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u>5</u>1230 ······ 563 1129

제31조

1.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32조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 판 | 시 | 사 | 항 |
|---|---|---|---|
| | | | |

공보호수 쪽수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외국환거래법(구)

제 18조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 2.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 까지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8조 (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18조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적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1230 ····· 563 1129

제18조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공보호수 쪽수

제27조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 까지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8조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29조 (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29조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적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u>5</u>1230 ····· 563 1129

제**29**조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31조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 | 판 | 시 사 | ठॅ}- | 공보호수 | 쪽수 |
|----|--|--|--|---|--|------|
| | > 2019. 1. 31. | 2018도16474 | | | 558 | 707 |
| 1. | '미신고 자본거i
를 의미하는지 | ∥29조 제1항 계
개'는 개별적으:
여부(원칙적 적 | 제3호, 제18 <i>조</i>
로 이루어지는
 극) | : 제1항 본문어
: 자본거래 금약 | 것)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백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707 |
| 1. | 미신고 자본거리를 의미하는지 를 의미하는지 를 의미하는지 되고인 甲 주식 게 신고하지 아후 총 31회에 참에금거래를 함으되었는데, 미신 거래금액을 합하는 법 제29조를 한다고 한 사례 | #29조 제1항 /
#'는 개별적으,
여부(원칙적 적
회사의 대표이/
니하고 해외에/
일처 미화 합계
보로써 미신고 /
고 외화예금거
하면 합계액이
제1항 제3호, | 제3호, 제18조
로 이루어지는
 극)
사 피고인 乙여
서 비거주자인
4,555,785달
자본거래를 하
대 중 10억 역
10억 원을 초
제18조 제1형 | : 제1항 본문어
: 자본거래 금
이 거주자로서
해외 금융기록
날러(한화 5,21
였다고 하여 오
원을 초과하는
:과하는 사안에
: 본문 위반죄의 | 것)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백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자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한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7,684,306원 상당)의 외화 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기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 | 707 |
| 1. | 까지만 효력을
허가 자본거래도
한 '범죄로 되지 | ,
상 자본거래 ㅎ
가지는지 여부
말 인한 외국환
아니하는 경우 | (적극) 및 20
거래법 위반의
P'에 해당하는 | 06. 1. 1.부터
] 점은 형사소·
지 여부(적극) | 처벌규정은 2005. 12. 31.
2009. 1. 29. 사이의 무
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 | 1129 |
| 1. | 까지만 효력을
허가 자본거래호
한 '범죄로 되지 | ,
상 자본거래 ㅎ
가지는지 여부
足 인한 외국환
아니하는 경우 | (적극) 및 20
거래법 위반의
P'에 해당하는 | 06. 1. 1.부터
] 점은 형사소·
지 여부(적극) | 처벌규정은 2005. 12. 31.
2009. 1. 29. 사이의 무
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 | 1129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에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공보호수 쪽수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구)

제30조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 까지만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019. 4. 11. 2015도1230 ······ 563 1129

제40조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40조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1. 31. 2018 ⊆ 16474 ······ 558 707

제40조 (2016. 5. 31. 대통령령 제2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40조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에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에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공보호수 쪽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9. 1. 17. 2015¹+236196 ······ 557 442

제13조

-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9. 1. 17. 2015中236196 ······ 557 442

은 행 법(구)

제23조의5 (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은행과 丙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궁한 사례
 - ▶ 2018, 11. 29. 2017¹435717 ····· 554 138

의 료 법

제27조

1. [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소개·알선' 및 '유인'의 의미

제33조

- 1.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기(=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 19 ¹ | 년 1월∼6월 판례공보 | 의 . | 료 법 |
|-----------------|---|------|-----|
| | 판 시 사 항 | 공보호수 | 쪽수 |
| |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 248 |
| | 제36조 | | |
| 1.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은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명의별 | 248 |
| | 제37조 | | |
| 1.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명의별 | 248 |
| | 제38조 | | |
| 1. | [2] 포괄일좌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된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좌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명의별 | 248 |
| | 제40조 | | |
| 1.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등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명의별 | 248 |
| | 제45조 | | |
| 1.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은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명의별 | 248 |
| | 제48조 | | |
| 1. | [2] 포괄일좌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된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좌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좌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명의별 | 248 |
| | 제49조 | | |
| 1.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등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 명의별 | 248 |
| | 제87조 | | |
| 1. |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급 | | |

공보호수 쪽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기(=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554 248

제88조

- 1.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至20928 ······ 564 1201

의 료 법(구)

제27조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위 사이트를 통하여

공보호수 쪽수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적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도20928 ······ 564 1201

제56조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도20928 ······ 564 1201

제88조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 ⊆ 20928 ····· 564 1201

제**91**조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 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 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도20928 ······ 564 1201

임대주택법(구)

제14조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의미
 -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 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 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u></u> 38792 ····· 554 168

제19조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임대주택법 시행령(구)

제18조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 2019. 4. 3. 2015¹+250413 ······ 562 969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구)

제12조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 2019. 4. 3. 2015中250413 ······ 562 96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제5조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 임야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같은 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8[‡]287751 ······ 558 636

제**11**조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 임야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같은 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8中287751 ······ 558 6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9조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 등이 같은 날 甲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丙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 아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 4. 11. 2017 **-** 57899 ······ 563 11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1.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 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쪽수 |
|----|--|-----|
| | 방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가호에서 정한 '통과 선
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두63726 ···································· | 771 |
| | 제8조 | |
| 1. |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두53180 | 210 |
| 2. | [2]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두63726 | 771 |
| | 제17조 | |
| 1. |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
| | ▶ 2018. 11. 29. 2016 - 53180 | 210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구) | |
| 1. | 제9조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가호에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두63726 | 771 |
| 1. | 제10조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 | |

는지 여부(소극)

시 사 항 판

공보호수 쪽수

2. [2]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 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F63726 ······· 559 771

제13조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ㆍ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 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553180 ······ 554 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 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 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가호에서 정한 '통과 선 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2. 14. 2017두63726 ······ 559 77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 **13조** (2016. 7. 1. 기획재정부령 제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 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 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가호에서 정한 '통과 선 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구)

제**2**조 (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 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11. 2018-766227 ······ 563 1120

제28조 (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 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 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33조 (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 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 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11. 2018-766227 ······ 563 11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 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 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11. 2018- 766227 ······ 563 112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 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中254507 ······ 563 1037

제9주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채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 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0조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 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¹4254507 ······ 563 103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구)

제6조 (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 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中254507 ······ 563 1037

저 작 권 법

제2조

- 1.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 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 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판매대리 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계 약)을 통하여 라이선스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동 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甲 회 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사용하면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는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

공보호수 쪽수

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乙 회사의 일시적 복제 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 2018. 11. 15. 2016中20916 ······ 553 8

제16조

- 1.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甲회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사용하면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의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는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乙 회사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 2018. 11. 15. 2016닥20916 ······ 553 8

- 2.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 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 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

▶ 2019. 2. 28. 2016¹

→ 2019. 2016

제18조

- 1.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 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 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

공보호수 쪽수

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개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9. 2. 28. 2016⁻

271608 ······ 560 803

제35조의2

- 1.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판매대리 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사용하면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는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 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乙 회사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 2018. 11. 15. 2016다20916 ······ 553 8

제46조

- 1.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가 위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사용하면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의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게 되는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乙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乙 회사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 2018. 11. 15. 2016닥20916 ······· 553 8

| 사 | 항 |
|---|---|
| | 사 |

공보호수 쪽수

제54조

- 1. (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이 대항요건인지 여부 (적극) 및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102조

- 1.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 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 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
 - **▶** 2019. 2. 28. 2016中271608 ······ 560 803

제103조

- 1.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 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 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위 동영상에 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乙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 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시 사 파

공보호수 쪽수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 2018. 12. 27. 2017도15226 ······ 556 4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 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 2018. 12. 27. 2017도15226 ······ 556 420

제2조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 통신망에 의해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 2018. 12. 27. 2017도15226 ······ 556 420

제44조의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 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 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 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 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8도14610 ····· 553 92

- 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 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 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 위 문자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9. 1. 10. 2016도8783 ····· 557 520

제48조

1.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 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 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1

| 톤 | 통신밍 | 이용촉진 | 및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 판례공보 | 제553호 | ~제5 | 564⊴ |
|---|---|--|---|--|--|---|--|---|--|--|------------------|------|
| | | 2010 12 | 25 | 판 | | | 사 | _ | | | 호수 | |
| | J | ► 2018. 12. | 27. | 2017年152 | 226 | ••••• | ••••• | •••••• | | •••••• | 556 | 420 |
| | 제49 | 9조 | | | | | | | | | | |
| - | (2) | 통신망에 의
처리·전송이
정보통신체제
겨부(적극) ,
정보통신망
침해' 및 '누
보통신망에
정보통신망이
몰래 정보통 | 해 :
 위 내 / 이용'으
 침입 집 집 집 집 전 말 플 | 처리·보관
료된 다음
에서 저장
규정에서
촉진 및 정
하는 등 !
하는 상태야
의 장치나
돈함시키는 | 또는
사용/
· 보관
말하는
당보보호
위 규정한
게 있는
제 있는
해석이 | 전송도
자의 /
중인
등 타인
등 등에
다단
는 것을
일 지형 | 내는 타
내인용
것으로
의 비탈
인의 I
판한 I
인의 I
보통
보장주
법정주 | 인의 비밀
컴퓨터(PC
- 볼 수 있
밀의 의미
법률 제49
비밀 참해
방법에 사
! 정당한 7
등의 방법으 | 9조 위반행위의 '의 범위 및 정보
')에 저장·보관
있는 비밀이 이에
9조에서 말하는
또는 누설'에서
용자가 식별부호
접근권한 없는 시
으로 타인의 비밀
되는지 여부(소극 | 보통신망으
되어 있으
포함되는
타인의 비
요구되는
릴 입력하
라이 사용
을 취득・ | 로나지 밀정여자누 | 420 |
| | 제7 ⁻ | l 大 | | | | | | | | | | |
| | (1) ?
?
(2) ? | 정보통신망
통신망에 의
처리·전송이
정보통신체제
겨부(적극) /
정보통신망
침해 및 '누
보통신망에
정보통신망어
물래 정보통
설하는 행위 | 해 :
 위 용 '으 점 집 집 집 명 꼭 | 처리·보관
료된 다음
에서 저장
규정에서
촉진 및 정
하는 등 ¹
하는 등 ¹
하는 장치나
본함시키는 | 또는
사용/
보관
말하는
보보하는
귀 규정한
게 있는
해석이 | 전송도
자의 기
중인
호 등에
한 등에
부 수단
는 것을
일 이용 | 는 타
 | 인의 비밀
컴퓨터(PC
: 볼 수 있
일의 의미
법률 제49
비밀 참해
방법'에 사
! 정당한 건
등의 방법으 | 9조 위반행위의 '의 범위 및 정보
')에 저장·보관
있는 비밀이 이에
9조에서 말하는
또는 누설'에서
용자가 식별부호
접근권한 없는 시
으로 타인의 비밀
다는지 여부(소극 | 보통신망으
되어 있으
포함되는
타인의 비
요구되는
릴 입력하
라이 사용
을 취득・ | 로나지 밀정여자누 | 420 |
| - | 항 저
도달 [†]
방의
다른
자메/ | 통신망 이용·
 3호에서 처
하게 하는 행
휴대전화로
제한 없이 | 벌히
 위'이
공포
문자
하였 | 는 '공포심
 해당하는
[심이나 불
메시지를 ㅂ
는지와 상 | l이나
-지 판
안감을
바로 접
관없이 | 불안김
단하는
유발
 할 수
 공포/ |)을 유
기준
하는 문
있는
심이나 | 발하는 문
및 도달하
'자메시지를
상태에 이름
불안감을 | 세1항 제3호, 제
언을 반복적으로
게 한다'는 것의
를 전송함으로써
른 경우, 상대방(
유발하는 문언을 | 상대방에
의미 / 상
상대방이
기 실제로 | 게
대
별
문 | |

- 1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중국하는지 역구(역도)
 - ▶ 2018. 11. 15. 2018도14610 ······ 553 92
- 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 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 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 위 문자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2019. 1. 10. 2016도8783 ······ 557 520

공보호수 쪽수

제75조

1.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메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9. 1. 10. 2016도8783 ······ 557 520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 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 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세범 처벌법(구)

제9조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 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 11. 9. 2014도9026 ····· 553 81

주민등록법

제6조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2019. 4. 11. 2015¹+254507 ····· 563 1037

| 판 | 시 | 사 | ે |
|---|---|---|----------|
| | | | |

공보호수 쪽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1.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26조

- 1.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제57조

- 1.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 **>** 2019. 4. 3. 2015 \$\text{\$\text{\$\text{\$}}\$} 250413 \$\text{\$\text{\$\$}\$}\$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구)

제21조의2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 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공보호수 쪽수

주 택 법

제2조

- 1. [2]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의미
 -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9조

- 1.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의제된 인허가)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적극)
 -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6]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해당 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주택 단지)에 국한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설치될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인허가가 의제되기 위한 요건
 -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제 28조

- 1.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29. 2016-738792 ······ 554 168

주 택 법(구)

제2조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쪽수 |
|----|--|-----|
| | ▶ 2019. 3. 28. 2015年49804 ····· 562 | 952 |
| 1. | 제2조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의미 | |
| |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두38792 | 168 |
| | 제 16 조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
| 1. |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두38792 | 168 |
| | 제17조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
| 1. |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의제된 인허가)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적극) | |
| |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
| | 정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구(오득) [6]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해당 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주택 단지)에 국한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설치될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인허가가 의제되기 위한 요건 ▶ 2018. 11. 29. 2016두38792 | 168 |
| | 제23조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
| 1. |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업도로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 | ▶ 2018. 11. 29. 2016 - 738792 ······· 554 | 168 |
| | 주택법 시행령 | |
| | | |
| 1 | 제39조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 | |
| 1. | 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
되는지 여부(소극) | |
| | ▶ 2018. 11. 29. 2016 - 738792 | 168 |

공보호수 쪽수

주택법 시행령(구)

제 24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3]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부지'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29. 2016-538792 ······ 554 16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1. (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 2018. 12. 27. 2016¹

 → 2018 27. 2016¹

 → 2018 355
- 2.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 [3] 甲 주식회사가 乙 신탁회사와 甲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 회사의 승낙 없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丁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丁 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戊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丙은 甲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丁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丙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丙은 임차권으로 주택의 매수인인 戊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28. 2018年44879, 44886 ······· 562 965

- 3.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2019. 4. 11. 2015中254507 ····· 563 1037

공보호수 쪽수

주택임대차보호법(구)

제3조 (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 2018, 12, 27, 2016¹ 265689 ······ 556 355

중 재 법

제36조

- 1.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의 의미

▶ 2018. 12. 13. 2018⁻

→ 2018 12. 13. 2018⁻

→ 2018 12. 13. 2018⁻

제37조

- 1.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 [4]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의 특허 등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출원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甲 회사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규정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의미 및 분쟁에 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할에 속하는 것만으로 해당 분쟁 자체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9. 2016中18753 ······ 554 116

- 2. (3)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보호수 쪽수

제39조

- 1.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 [4]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의 특허 등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출원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甲 회사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규정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의미 및 분쟁에 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할에 속하는 것만으로 해당 분쟁 자체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8. 11. 29. 2016다18753 ······ 554 116
- 2. [3]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8. 12. 13. 2016⁻ 49931 ······ 555 264

지방세기본법

제18조

- 1.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甲 법인이 재외공 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甲 법인과 외무부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하자, 내무부장관이 甲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甲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약 19년 동안 甲 법인에 대 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 데, 그 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공한 사례

제46조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파 시 사 핬 공보호수 쪽수

▶ 2019. 3. 28. 2015-5591 ······ 562 995

제50조

1. [2]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甲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고, 그 후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丙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에서,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丙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丙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가 주장 하는 乙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¹**-**216028, 216035 ······· 558 610

지방세기본법(구)

제 **17**조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 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51조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2]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甲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고, 그 후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丙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에서,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丙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丙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가 주장 하는 乙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¹**-**216028, 216035 ······· 558 610

공보호수 쪽수

지 방 세 법

제7조

1. (2)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甲 법인이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甲 법인과 외무부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하자, 내무부장관이 '甲 법인이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甲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약 19년 동안 甲 법인에 대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궁한 사례

▶ 2019. 1. 17. 2018두42559 ······ 557 515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2019. 3. 28. 2015-5591 ······ 562 995

제107조

1. [2]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甲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고. 그 후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丙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위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반소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에서,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丙 회사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위 토지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조합이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토지 지분에 관한 丙 회사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丙 회사가 주장 하는 乙 조합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7년216028. 216035 ······· 558 610

지 방 세 법(구)

제6조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 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3. 2017- 66824 ······ 562 998

| 판 | 시 | 사 | 항 |
|---|---|---|---|
| | | | |

공보호수 쪽수

| 제7조 | (2015 | 12 | 20 | 버류 | 제13636호로 | 게저되기 | 저이 | ノイハ |
|-------|--------|-----|-----|----|-----------|------|----|-----|
| 제 / 그 | 12015. | 12. | 29. | 법률 | 제 13030오도 | 개성되기 | 신의 | -/J |

-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 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1조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 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22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제23조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9. 1. 10. 2017**두**31538 ······ 557 501

제28조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9. 1. 10. 2017**두**31538 ······ 557 501

제 28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공보호수 쪽수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 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30조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05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11조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 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27조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45조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48조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10. 2017-531538 ······· 557 501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45조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45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甲 법인이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甲 법인과 외무부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하자, 내무부장관이 '甲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甲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약 19년 동안 甲 법인에 대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9. 1. 17. 2018두42559 ····· 557 515

공보호수 쪽수

제84조 (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甲 공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납부액 중 경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 항은 법문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甲 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도, 위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23. 2018¹ 287287 ······ 564 1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6年50037 ······ 554 205

2. [2]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甲 법인이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甲 법인과 외무부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하자, 내무부장관이 '甲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甲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약 19년 동안 甲 법인에 대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9. 1. 17. 2018 - 42559 ····· 557 51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구)

제 22조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사례

▶ 2018, 11, 29, 2016-50037 ······ 554 205

제22조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자치법

제22조

- 1.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 (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9. 1. 31. 2018**~**43996 ······ 558 681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공보호수 쪽수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제3조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1]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양수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018. 12. 28. 2018¹+219727 ······ 556 381

제20조

- 1. [1]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양수인이 채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및 여기에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해당 토지나 그 지분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믿은 제3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지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대지 지분을 취득한 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대지나 그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선의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 2018. 12. 28. 2018¹+219727 ······ 556 381

제48조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 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2. 28. 2016¹4255613 ······ 560 8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 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 는지 여부(소극)
 - [2]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곧 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 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 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죄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 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제13조

-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 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 는지 여부(소극)
 - [2]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곧 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 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

| 판 | 시 | 사 | ઠ્ |
|-----|-----|-----|----|
| 1 ' | 7.1 | 7.1 | |

공보호수 쪽수

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적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 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19. 1. 10. 2016도21311 ······ 557 523

제19조

1. [2]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곧 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0. 2016도21311 ······ 557 523

제20조

1.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 17. 2015中236196 ······ 557 442

제24조

-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 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적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 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19. 1. 10. 2016⊊21311 ····· 557 5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19. 1. 10. 2016⊊21311 ····· 557 523

공보호수 쪽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 1.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메각되고 메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 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제58조

- 1.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메각되고 메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 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 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다286577 ······ 554 142

제70조

1.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8中203715 ······ 563 1051

제141조

1.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

공보호수 쪽수

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2018. 11. 29. 2017¹

 2018. 2017¹

 2017¹

제145조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의미 / 위 규정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가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5中240041 ······ 558 589

제179조

1.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8中203715 ······ 563 1051

제251조

- 1.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의미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약286577 ······ 554 142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 3. 14. 2018[‡]+281159 ······ 563 1031

제252조

- 1.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의미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 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 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 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 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 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¹

→ 2018. 2017¹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제256조

- 1.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 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 지 여부(적극)
 - [5] 甲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 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회생절차에 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甲 회사에 대한 회 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乙 회사 명의 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乙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 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¹

→ 2018. 2017¹

→ 2018 11. 29. 2017¹

→ 2018 11. 29. 2017¹

제347조

- 1.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 증기금이 乙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 이의소송 진행 중에 甲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공보호수 쪽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丙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乙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丙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제382조

- 1.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乙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甲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丙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乙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丙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한 사례

▶ 2019. 3. 6. 2017¤}5292 ······ 561 839

제384조

- 1.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乙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甲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丙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乙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丙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한 사례

▶ 2019. 3. 6. 2017¹+5292 ····· 561 839

| 판 | 시 | 사 | 항 |
|---|---|---|---|
|---|---|---|---|

제404조

- 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위기부인의 행사 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 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에서의 기간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406조

- 1.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2019. 3. 6. 2017[□]15292 ······ 561 839

제422조

-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의미 / 위 규정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가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위기부인의 행사 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 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에서의 기간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2019. 1. 31. 2015년240041 ······ 558 589

제610조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 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

▶ 2019. 3. 19. 2018¹ +6364 ······ 561 862

제611조

1.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19. 3. 19. 2018¹ 6364 ····· 561 862

제614조

1.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공보호수 쪽수

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 · 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19. 3. 19. 2018中6364 ······ 561 862

제619조

-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 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
 -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19. 3. 19. 2018म}6364 ······ 561 862

부칙(2017. 12. 12.) 제1조

1.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19. 3. 19. 2018中6364 ······ 561 862

부칙(2017. 12. 12.) 제2조

1.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19. 3. 19. 2018¹ | 6364 ······ 561 86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제611조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2019. 3. 19. 2018¹H6364 ······ 561 86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

1.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파 시 사 공보호수 쪽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1. 15. 2016-45158 ······ 553 46

초・중등교육법

제3조

- 1. [1]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 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 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 의의무의 내용
 -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 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은 乙에 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8. 2016[‡]+33196 ······· 556 374

제12조

- 1. [1]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 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 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 의의무의 내용
 -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 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은 乙에 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8, 12, 28, 2016中33196 ······ 556 374

초・중등교육법(구)

제**4조**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 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 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2019. 3. 25. 2016[□]+5908 ······ 562 951

공보호수 쪽수

최저임금법(구)

제1조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 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中2451 ····· 563 1074

제6조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 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¹ + 2451 ····· 563 1074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구)

제2조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¹ + 2451 ····· 563 1074

공보호수 쪽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4조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4]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 2018. 11. 9. 2014⊆9026 ······ 553 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1.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에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에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에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특 허 법

제2조

1. [1]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물건이 위 방법의 발명을 실직적으로 구현한 경우,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

|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쪽수 |
|-----|----|---|-----|
| | | 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물건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31. 2017다289903 | 622 |
| | | 제29조 | |
| 1 |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2. 13. 2016후1840 | 333 |
| 2 | |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699 |
| ★ 3 | 3. | [3]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19. 2. 21. 2017후2819 | |
| | | | 650 |
| 1 | | 제89조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019. 1. 17. 2017다245798 | 459 |
| | | 제97조 | |
| 1 | |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
단하는 방법 /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
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6마5698 | 593 |
| 2 | | ▶ 2019. 1. 31. 2010年3098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2019. 1. 31. 2018다267252 | |
| | | | |
| 1 | | 제99조
[1]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 | |

| 판 | 시 | 사 | 힝 |
|---|---|---|---|
| | | | |

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물 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에 의 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물건이 위 방법의 발 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경우.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7¹

2019. 2019. 1. 31. 2017¹

2019. 31. 31. 2017¹

제100조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 2019. 4. 25. 2018¹ 287362 ······ 564 1179

제102조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 2019. 4. 25. 2018中287362 ····· 564 1179

제126조

- 1.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 단하는 방법 /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 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특허권침해금지의 소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 2019. 1. 31. 2016[□] 15698 ······ 558 593
- 2.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 단하는 방법

제127조

1. [1]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 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물 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에 의 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물건이 위 방법의 발 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경우,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7¹¹289903 ······ 558 622

2.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

| 판 | 시 | 사 | 항 |
|---|---|---|---|
| | | | |

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28조

1.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 단하는 방법 /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 의 핵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1. 31. 2016中5698 ······ 558 593

- 2.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 단하는 방법

제133조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4. 25. 2018¹ + 287362 ······ 564 1179

제135조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 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 하는 방법

특 허 법(구)

제29조 (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3]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19. 2. 21. 2017亭2819 ······ 560 830

제89조 (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판 | 시 | 사 | 항 |
|---|---|---|---|
|---|---|---|---|

제95조 (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 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 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제133조 (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1. [1]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2019. 2. 21. 2017亭2819 ······ 560 830

특허법 시행령(구)

제7조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 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 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 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 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2018. 11. 29. 2016-35229 ······ 554 163

공보호수 쪽수

제6조 (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6-55229 ······ 554 163

제20조 (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6-35229 ······ 554 1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조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6-535229 ······ 554 163

공보호수 쪽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좌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적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좌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좌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u>年</u>20928 ······ 564 1201

제17조

1.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4. 25. 2018 \(\overline{\pi} \) 2019. \(\overline{\pi} \) 2018 \(\overline{\pi} \) 20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 12. 13. 2018두51485 ······ 555 299

제25조의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 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 12. 13. 2018-51485 ······ 555 299

하 수 도 법

제10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 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 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

2019. 24. 2016⁻

2019. 358 531

하 천 법

제5조

1. [2]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4**두**11601 ······· 556 391

제33조

1. [2]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4**〒**11601 ······ 556 391

제50조

1.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 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 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 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

하 천 법(구)

제25조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2]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33조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2]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 12. 27. 2014<u></u> 11601 ······ 556 3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15. 2016년-258209 ······ 553 20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1.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 (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 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보호수 쪽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6-35229 ······ 554 163

행정소송법

제1조

- 1. [3]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1. 17. 2016-56721, 56738 ······ 557 481
- 2.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2019. 1. 31. 2017**두**40372 ······ 558 674

- 3. [5]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019. 4. 3. 2017두52764 ······ 562 988

제2조

1.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5-552395 ······· 554 158

2.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의제된 인허가)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적극)

- 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 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각 통보의 처 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 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2. 14. 2016- 1729 ······ 559 753

제8조

★ 2.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제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제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개할 의무

|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쪽수 |
|---|----|--|------|
| | | 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 2019. 2. 21. 2017후2819 ······ 560 | 830 |
| | 1. | 제13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의 피고로 정한 행정청의 의미(=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 ▶ 2019. 4. 3. 2017두52764 | 988 |
| | 1. | 제19조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 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의제된 인허가)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적극) | 1.50 |
| | 2. | ▶ 2018. 11. 29. 2016두38792 | 168 |
| | | ▶ 2019. 1. 31. 2017두40372 ······ 558 | 674 |
| | 1. | 제20조 [4]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 2019. 4. 3. 2017두52764 ······· 562 | 988 |
| | 1. | 제22조 [3]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 481 |
| | 1. | 제27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 2. | ▶ 2019. 1. 17. 2017두59949 557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 2019. 2. 21. 2017후2819 | |
| | 1. | 제30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6두52019 | 663 |
| | | | |

| 판 | 시 | 사 | Ď, |
|---|---|---|----|
| | | | |

| 저 | 135 | 츳 |
|---|-----|---|
| | | |

1.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38조

1.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 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 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1. 31. 2016<u></u>52019 ······ 558 663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절차법

제3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제17조

1.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제23조

1. [2]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당사 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 극) 및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의 의미

▶ 2019. 1. 31. 2016- 564975 ······· 558 669

공보호수 쪽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제14조의2

1. [2]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당사 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 극) 및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의 의미

▶ 2019. 1. 31. 2016 - 64975 ······ 558 669

제37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헌 법

제2조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1. 2015中254507 ····· 563 1037

제6조

- 1.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 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 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9조

1.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 | | 판 시 사 항 | 공보호수 | 쪽수 |
|------------|--------------------|--|---|-----|
| | | ▶ 2019. 2. 28. 2017두71031 ····· | 560 | 824 |
| | 제 | 10조 | | |
| - | 1. 〔3 |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적극) | 무효인지 여부 | |
| | | ▶ 2018. 11. 29. 2016도14781 ······ | 554 | 232 |
| | 제 | 11조 | | |
| | | ①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 등 한다. 무이 국립대학인 乙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교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하실을 통보받은 乙 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 ○ 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말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3. 14. 2015두46321 | 부(소극)
시간당 강의료
한다고 고지함
 , 국민연금공
 당한다'는 사
시간강사료와

 당한 사안에서,
 료를 차등지급
 법리를 오해한 | 867 |
| | 和 | 12조 | | |
| * : | | 12고 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을 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한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법원이 국선
 를 하여야 하
= 피고인이 소
수 없는 사유
+ 정한 형사소 | |
| | | ▶ 2018. 11. 22. 2015도10651 ······ | | 95 |
| 4 | 2. [3 |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적극) | 무효인지 여부 | |
| | | ▶ 2018. 11. 29. 2016도14781 ···································· | 세한할 수 있는
의미와 범위를
한 경우, 변호
어지지 않았는
 해로 인한 국
후 국가정보원
영하는 임시보
등이 甲에 대
성하였으나, 국
위하였고, 이에
- 구한 사안에 | 232 |

| 판 | 시 | 사 | <u>ૄ</u> |
|---|---|---|----------|
| | | | |

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Z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6낙266736 ······· 556 358

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2018. 12. 27. 2017도15226 ······ 556 420

- 5.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 6.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7.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19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9년 1월~6월 판례공보 | 헌 | 법 |
|---|--|-----|
| 판 시 사 항 공 <u>년</u> | 보호수 | 쪽수 |
| ▶ 2018. 11. 29. 2016도11841 ······ | 554 | 229 |
| 제21조 | | |
| 1.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 여부 | 232 |
| | 334 | 232 |
| 제22조 1.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 여부 | 232 |
| | 334 | 232 |
| 제23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 ! 효
지를
 극)
자가
 -(원
 사 | 531 |
| | 338 | 331 |
| 제27조 1.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2019. 1. 31. 2017두40372 | 후행
자를 | 674 |
| ▶ 2019. 1. 31. 2017年40372 ★ 2.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아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고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대상
는 삼
시키
! 제
부당
하고
령위 | |
| 제31조 | | |
| 1.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적극) | 여부 | |
| ▶ 2018. 11. 29. 2016도14781 ···································· | | 232 |

| 사항이 포함되는지 어무(적극) ▶ 2018. 11. 29. 2018박207854 — 554 151 제32조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급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남급체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급을 제외한 고청급이 최저임급에 미단하는 것을 회꾀한 의도로 사용자가 소청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행상 액수를 중가시키기 위해 매시순원근도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해대나 운행시간의 법인 없이 소청근로시간만의 단축하기로 한 협의의 효력(무효) 및 이리면 법리는 사용자가 백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물의를 얻어 소청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번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다2451 — 563 1074 제37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환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사항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 554 229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집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토지의 수사원을 상숙함인 독집의 ·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토지의 여부(전극) / 독집적 ·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이 시 제한되는 지 여부(전극) / 독집적 ·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이 시 제한되는지 이 부진을 / 독점적 · 대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이 시 제한되는지 이 부진을 / 독점적 · 기를 구정할수 수 있는지 이부(전급) / 독집적 · 반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원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구장할수 수 있는지 이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구장할수 수 있는지 이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기관 및 요리를 구장할수 수 있는지 이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명의 입사항 이용된 확산함 사용이 기한 권리를 구정할수 수 있는지 이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명의 제39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사항 / 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무(적극) 및 이대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 554 229 제77조 1. [1] 1979. 10. 18.자 비상계업 신포에 따른 게임포고 제1호의 위원에 관한 법명의 인무인지 어무(적극) / 계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계심환경 당시 폐지된 형법 관련 법령이 당근라는데 위한 '문화'의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게임포고 제1호의 위원・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검사기관(드대법인) (3)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게임포고 제1호의 위원・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검사기관(드대법인) (3)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게임포고 제1호의 위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검사기관(드대법인) (3)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게임포고 제1호의 위원・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검사기관(드대법인) (3)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게임포고 제1호의 위한 위법 연구에 대한 권부터 이미 유신원입, 구 게임법에 위배되어 위원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및 2018 11. 29. 2016도14781 — 554 232 | |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 ~ 쪽수 |
|--|-------------|--|------|
|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급제하에서 생산교에 따른 업금을 제외한 고정답이 최저임급에 비달하는 것을 회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청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중가시키기 위해 백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청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함의의 효력(무효) 및 이라한 법리는 사용자가 백시운전근로자 의용으로 취업규칙을 반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다2451 | | | 151 |
| ★ 1.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급제하에서 생산교에 따른 업금을 제외한 고정답이 최저임급에 비달하는 것을 회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청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중가시키기 위해 백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청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함의의 효력(무효) 및 이라한 법리는 사용자가 백시운전근로자 의용으로 취업규칙을 반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19. 4. 18. 2016다2451 | | 제 3 2 조 | |
|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환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554 229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환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여자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영화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투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투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하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환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의 있는지 환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558 531 제39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554 229 제77조 1. [1]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업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제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제심관련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한 '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좌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업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업법에 위배되어 위한・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 1. |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 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1074 |
|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554 229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관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등장하고 수위권을 하지 모두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중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투정중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해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558 531 제39조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뱀역거부의 의미 / 전정한 양심에 따른 뱀역거부가 뱀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554 229 제77조 1. (1)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 부인지 여부(적극) / 제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제심환된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 이 당초부터 위한 - 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한・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 제37조 | |
| ★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베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베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숙받은 상숙인의 독점적・베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베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베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558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554 229 제77조 [1]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계업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무인지 여부(적극) / 채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제심관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한・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폐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계업포고 제1호의 위한・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업 선포에 따른 계업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친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업법에 위배되어 위한・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1. |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 |
|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반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다264556 | | | 229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방법 | ★ 2. |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531 |
|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 | 제39조 | |
| 제77조 1. [1]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현·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좌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1. |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
| 1. [1]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현·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 ▶ 2018. 11. 29. 2016도11841 ······ 554 | 229 |
| 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현·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현·위법 여부에 대한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현·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 제77조 | |
| ▶ 2018 11 29 2016⊊14781 | 1. | 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현·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펴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현·위법 여부에 대한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
| ★ 2.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 ↓ 9 | ▶ 2018. 11. 29. 2016도14781 | 232 |

공보호수 쪽수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제101조

-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9. 1. 4. 2018△563 ······ 556 389
- ★ 2.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제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 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02조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¹ ¥2229 ······ 561 889

제103조

-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019. 1. 4. 2018△563 ····· 556 389

제106조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 판 | 시 | 사 | <u>ૄ</u> |
|---|---|---|----------|
| | | | |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07조

1.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제108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10651 ····· 553 95

제109조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19조

★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1. 24. 2016年264556 ····· 558 531

헌 법(구)

제8조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1. [3]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 2018, 11, 29, 2016⊊14781 ······ 554 232

제9조 (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 | 판 시 사 항 공보호 | 수 쪽수 |
|----|---|---------------|
| |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 모2229 | <u>}</u> |
| 1. | 제10조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1 |
| 1. | 제 18조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
| 1. | 제19조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3] 1979. 10. 18.자 비상계임 선포에 따른 계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2018. 11. 29. 2016도14781 |]
<u>1</u> |
| 1. | 제54조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1]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3
H
1 |
| 1. | ▶ 2018. 11. 29. 2016도14781 제64조 (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 |
| | ▶ 2019. 3. 21. 2015 ¹ 22229 ································ | 561 889 |

공보호수 쪽수

제76조 (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 ₹2229 ····· 561 889

부칙(1948. 7. 17.) 제100조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법

제1조

- 1.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심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 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 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2018, 12, 27, 2017도15226 ······ 556 420
- 2.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 10 | <u>'</u> ' | | _ | | | | | 0 | |
|---|----|------------|---|---|--|---|---|---|---|------|
| | | | | 판 | 시 | 사 | 항 | | 공보호수 | 쪽수 |
| * | 3. | [2] | ▶ 2019. 1. 31. 20
피고인이 피해자가
를 이용하여 간음힐
항거불능의 상태에
▶ 2019. 3. 28. 20 | 심신상실
의사로 피
있지 않은 | 또는 형
 해자를
경우, 취 |)거불능의
간음하였
준강간죄의 | 상태에 있\
 으나 피해자
 불능미수기 | 다고 인식하고
가 실제로는
ト 성립하는지 | 고 그러한 상태
심신상실 또는
여부(적극) | |
| | | 제1 | 3조 | | | | | | | |
| * | 1. | | 준강간죄에서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를 이용하여 간음힐
항거불능의 상태에
▶ 2019. 3. 28. 20 | 심신상실
의사로 피
있지 않은 | 해자를
경우, 취 | 간음하였
준강간죄의 | (으나 피해자
네 불능미수기 | ·가 실제로는
ŀ 성립하는지 | 심신상실 또는
여부(적극) | 1005 |
| | 2. | | 보험계약자가 고지
취를 위한 고의의
험금을 지급받았을
피고인이, 뛰에게
식회사와 피고인을
다음, 고지의무 위
당할 수 없는 이른
회사에 보험금을 친
햄금을 수렁하여 된 | 기망행위를
때)
이미 당뇨병
보험계약/
반을 이유:
바 면책기(
형구하여 당
변취하였다는
생위는 乙 | 인정하
사로, 투
로 乙 호
간 2년을
노병과
= 내용
회사를 | 는기 위한
혈압이 빌
더을 피보
회사로부터
는 도과한
고혈압
으로 기소 | 요건 및 이 병한 상태임
험자로 하는
네 일방적 해
이후 甲의
치료비 등의
된 사안에서
빠뜨려 처분 | 때 사기적의 을 숨기고 건 2건의 보험 약이나 보험 보험사고 발사 명목으로 1- , 피고인의 행위를 하게 | 기수시기(=보
건 생명보험 주
계약을 체결한
금 지급거절을
생을 이유로 乙
4회에 걸쳐 보
보험계약 체결
만드는 일런의 | |
| | | | 기망행위에 해당하
에 이른다고 한 사
▶ 2019. 4. 3. 201 | 례 | | | | | | 1026 |
| | 1. | | 20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야 하는지 여부(작
▶ 2018. 12. 27. 2 |] / 정당방
극) | 위가 성 | 립하려면 | 방위행위가 | 사회적으로 | 상당한 것이어 | 420 |
| | | 제2 | 21조 | | | | | | | |
| | 1. | [3]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야 하는지 여부(적·
▶ 2018. 12. 27. 2 |] / 정당방
극) | 위가 성 | 립하려면 | 방위행위가 | 사회적으로 | 상당한 것이어 | 420 |
| | | 제2 | 25조 | | | | | | | |
| * | 1. | (2) | 피고인이 피해자가
를 이용하여 간음힐
항거불능의 상태에
▶ 2019. 3. 28. 20 | 의사로 피
있지 않은 | 해자를
경우, 취 | 간음하였
준강간죄의 | (으나 피해자
네 불능미수기 | ·가 실제로는
ŀ 성립하는지 | 심신상실 또는
여부(적극) | 1005 |
| | | 제2 | 26조 | | | | | | | |
| * | 1. | (2) | 피고인이 피해자가
를 이용하여 간음힐
항거불능의 상태에
▶ 2019. 3. 28. 20 | 의사로 피
있지 않은 | 해자를
경우, { | 간음하였
준강간죄의 | ໄ으나 피해자
리 불능미수기 | ·가 실제로는
} 성립하는지 | 심신상실 또는
여부(적극) | 1005 |

| 판 | 시 | 사 | 항 |
|---|---|---|---|
|---|---|---|---|

제27조

★ 1.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 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19. 3. 28. 2018<u>年</u>16002 ······ 562 1005

제30조

1. [2]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 항의 죄를 범하고, 그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동종의 죄 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 를 범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 격'의 의미(=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

▶ 2018. 11. 29. 2016⊊6329 ····· 554 223

2.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 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 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 서, 위 문자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제37조

- 1.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 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 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 기(=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 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2018. 11. 29. 2018도10779 ····· 554 248
- 2.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파 시 사 핤

공보호수 쪽수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 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 ★ 3.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 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 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 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 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 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도14609 ······ 563 1134

제38조

- ★ 1.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회 판매하고]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 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 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 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 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 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도14609 ······ 563 1134

제39조

- ★ 1.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 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 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

공보호수 쪽수

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 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14609 ······ 563 1134

제51조

- ★ 1.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14609 ····· 563 1134

제55조

- ★ 1.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 4. 18. 2017 ⊆ 14609 · · · · · 563 1134

제56조

- ★ 1.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

공보호수 쪽수

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 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62조

- 1.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에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에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 2019. 2. 28. 2018도13382 ····· 560 835

제63조

1.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에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제87조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제123조

1. [3]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 3. 14. 2018도18646 ······ 561 882

제124조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 | 한 시 사 양 | 강보오ㅜ | 41 |
|----|---|--|-----------------------------------|
| |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모2229 ·································· | I 정당 | 889 |
| | 제136조 | | |
| 1. |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종 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는 112
욕설을
갈을 들
12신고
사안에
디와 경 | |
| 2. | ▶ 2018. 12. 13. 2016도19417 | =집회
범위) /
이유로
위가 곧
ት는 경 | 338523 |
| | 제137조 | | |
| 1. |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19. 3. 14. 2018도18646 ··································· | | 882 |
| | 제144조 | | |
| 1. |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부터 수회에 걸처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목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도19417 | 는 112
욕설을
말을 들
12신고
사안에
니와 경
해석과 | 338 |
| 2. | [2]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투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약
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
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범위) /
이유로
H가 곧 | |

▶ 2019. 1. 10. 2016도21311 ······ 557 523

| 판 | 시 | 사 | 힝 |
|---|---|---|---|
| | | | |

제 227조

1.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2019. 3. 14. 2018도18646 ······ 561 882

제231조

1.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28. 2018도13305 ······ 556 430

제 234조

1.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28. 2018⊊13305 ····· 556 430

제268조

1.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8도14262 ····· 556 425

제297조

- ★ 1.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 1.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2019. 3. 28. 2018도16002 ······· 562 1005

제299조

★ 1.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공보호수 쪽수

1.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19. 3. 28. 2018도16002 ······ 562 1005

제300조

★ 1.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제311조

- 1.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 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불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8. 11. 29. 2017도2661 ······ 554 239

제347조

- 1.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 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 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 [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甲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乙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乙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판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 2019. 4. 3. 2014도2754 ······ 562 1026

제352조

1.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 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28. 2018도13305 ····· 556 430

제355조

- 1.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 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 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 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甲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甲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 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도19308 ······ 555 335

법(구) 형

제39조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 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9. 4. 18. 2017도14609 ······ 563 1134

형 법(폐)

제77조 (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

★ 1. [1]'여순사건'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 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제194조 (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 1.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 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 2019. 3. 21. 2015¹ 2229 ······ 561 889

형사소송법

제30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3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공보호수 쪽수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34조

- 1.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 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 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 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임시보 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 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 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 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 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 당하다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6¹

→ 2018 12. 27. 2016¹

제37조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모**2229 ······ 561 889

제42조

- ★ 1.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 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제60조

- 1.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 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 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파 시 사 항

공보호수 쪽수

제65조

- 1.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73조

- 1.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74조

- 1.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76조

- 1.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89조

1.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공보호수 쪽수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 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 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 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8. 12. 27. 2016¹

→ 2018 12. 27. 2016¹

제200조의2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00조의3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 2229 ······ 561 889

제200조의4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01조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2229 ····· 561 889

공보호수 쪽수

제209조

- 1.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12조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13조의2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62조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그 자체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18. 12. 28. 2014도17182 ······ 556 428

제267조

- 1.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 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공보호수 쪽수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268조

- 1.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276조

1.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282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283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공보호수 쪽수

제298조

- 1.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제307조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08조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 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제(=검사)

▶ 2018. 11. 15. 2018 ⊆ 11378 · · · · · 553 89

2.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 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8. 11. 29. 2016도11841 ······ 554 229

3.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 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 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 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 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8. 12. 13. 2016⊊19417 ······ 555 338

★ 4.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 | | | | 판 | 시 | 사 | 항 | | 공보호수 | 쪽수 |
|---|----|---------------|---|---|---|---|---|---|--|-----|
| | | | 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 | 모2229 · | | | | | 561 | 889 |
| | | 제3 | 323조 | | | | | | | |
| * | 1. | | 이른바 '상고이유 제학으로 되었던 사항에 여부(적극) 및 항소역 아 판단한 사항 이외는 것은 상고심의 사 1심판결에 대하여 행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그보다 높은 형을 선반 등 새로운 사항을 > 2019. 3. 21. 2017 | 한하여 성
인이 항소 ⁶
의 사유를
후심 구조
소하지 ⁶
셨는데, 항
성고이유
상고이유 | 보고이유의
이유로 주
산 상고이
산에 반하
상거나 양
보거나 양
보기나 경
보기나 양
보기나 양 | 범위 내
장하거나
유로 삼아
=지 여부
형부당만
남사의 항
신이 항소·
상고하는 | 에서 그 당부
항소심이 직
다시 상고심
(적극) / 피:
을 이유로 항
소를 받아들 [©]
심의 심판대설
것이 적법한 | 나만을 심사하여여
 권으로 심판대설
 의 심판범위에
고인이 유죄가 약
 소하고 검사는
 여 제1심판결을
 당이 되지 않았다
 다 여부(소극) | 냐 하는지
상으로 삼
포함시키
신정된 제
양형부당
파기하고
턴 법령위 | 917 |
| | | 제3 | 325조 | | | | | | | |
| | 1. | | 1979. 10. 18.자 비
부인지 여부(적극) /
이 당초부터 위헌·보
하여 법원이 취하여여 | 재심이 ;
무효인 경
ㅑ 할 조치 | 개시된 시
우, 그 법
 (=무죄의 | 건에서 지
 령을 적
 선고) | ∦심판결 당시
용하여 공소기 |] 폐지된 형벌 R
가 제기된 피고서 | 관련 법령
나건에 대 | |
| | | [3] | 1979. 10. 18.자 비
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적극) | 법, 구 계약 | 엄법에 위 | 배되어 유 | 비헌·위법한 | 것으로서 무효약 | 인지 여부 | |
| | 0 | (0) | ▶ 2018. 11. 29. 201 | | | | | | | 232 |
| | 2. | [2] | 甲 주식회사 해고자
노사 관계자 140여 '
사 부사장인 乙을 향
아 나오니까 좋지?"
로 기소된 사안에서,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치에 대한 사회적 평 | 명이 있는
해 "야 C
등으로 여
제반 사 ²
. 예의에 | 가운데
○아, ○
 러 차례
정을 종합
벗어난 포 | 큰 소리로
○이 여기
乙의 이
하면, 피
단현이기는 | 도 피고인보다
기 있네, 니 여름을 불러 Z
고인의 위 빌
는 하지만 객곡 | · 15세 연장자로
이름이 ○○이잖
.을 모욕하였다는
!언은 상대방을
관적으로 乙의 약 | 서 甲 회
아, 〇〇
는 내용으
불쾌하게
민격적 가 | |
| | 0 | (0) | ▶ 2018. 11. 29. 201 甲 주식회사 대표이서 | 7도2661 | | | | | 554 | 239 |
| | ο. | | 11. 퇴직한 근로자 2이미 지급한 퇴직적
1.자 근로계약서의 역
회사는 乙에게 포괄역
지급하였는데, 乙의
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달리 보아 피고인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 | 乙을 상대
립금에 대
일급란 기
일급에 일
퇴사 후
- 자문을
제기한 기
제 사기미
례 | 로 2011.
 하여 부 ⁱ
재 금액;
급의 8.3
위와 같이
받고 별
것은 정당
수죄를 ⁽ | 12.부터
당이득반후을 변조하
%에 해당
 乙에게
도로 퇴조
 한 권리하 | 2015. 4.끼
환청구 소송을
여 증거자료
당하는 퇴직적
지급된 퇴직
임금 전액을 결
행사의 일환이
심판결에 소 | 지 포괄일급에
을 제기하면서 2
로 제출한 사안
립금을 포함하여
 적립금이 퇴직들
지급하였으므로
 라는 등의 이유
송사기의 법리를 | 포함하여
2015. 5.
에서, 甲
네 임금을
금 지급으
피고인이
-로, 이와
를 오해한 | |
| | , | 2 | ▶ 2018. 12. 28. 201 | | | | | | | 430 |
| | 4 | 사
우,
인. | 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
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 재심절차에서 무죄된
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적극) | ' 등 혐의
' 결이 확 | 로 고소 ⁸
정될 때 <i>끼</i> | 하였으나
 지는 국기 | 검찰에서 '혐
가를 상대로 | 의 없음' 결정을
불법구금이나 5 | 받은 경
그문을 원 | |
| | | | 2 019. 1. 31. 2016 | 다258148 | | | | | 558 | 602 |

파 시 사 핬 공보호수 쪽수

5.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는데,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 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한 사례

▶ 2019. 1. 31. 2018도16474 ······ 558 707

제326조

1. [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 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甲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 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 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乙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 에 이른다고 한 사례

▶ 2019. 4. 3. 2014도2754 ······ 562 1026

제338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57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보호수 쪽수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361조의2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至10651 ······ 553 95

제361조의3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졉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361조의4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61조의5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공보호수 쪽수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64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 ★ 2.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핚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 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65조

1.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 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 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공보호수 쪽수

한 사례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제369조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한 당한 당하고 함께 당한 당하고 함께 당한 당하고 함께 당한 당하고 함께 당하고 함께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70조

1.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2018. 11. 29. 2018도13377 ······ 554 253

★ 2.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371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장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장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장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장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반을 시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공보호수 쪽수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79조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383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직법한지 여부(소극)
 -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84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공보호수 쪽수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제389조의2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0조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1조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3조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이 직법한지 여부(소극)

공보호수 쪽수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4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5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6조

★ 1 [1] 이른바 '삿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삿고심은 핫소심에서 심판대삿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019. 3. 21. 2017도16593-1 ······ 561 917

제397조

- ★ 1.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 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 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 2019. 3. 21. 2017至16593-1 ······ 561 917

공보호수 쪽수

제415조

-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¹/₂2229 ······ 561 889

제420조

- 1.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 (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에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에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 ▶ 2019. 2. 28. 2018도13382 ······ 560 835
- ★ 2.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19. 3. 21. 2015<u>모</u>2229 ······ 561 889

제422조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38조

1.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 (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

공보호수 쪽수

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 2019. 2. 28. 2018 ⊆ 13382 · · · · · · 560 835

제439조

- 1.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 (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 2019. 2. 28. 2018도13382 ····· 560 835

제459조

- 1.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에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한 사례

▶ 2019. 2. 28. 2018도13382 ····· 560 835

형사소송법(구)

제3조 (1954. 9. 23. 법률 제341호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모**2229 ······ 561 889

제6조 (1954. 9. 23. 법률 제341호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공보호수 쪽수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 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규칙

제1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18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 28조

★ 1.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 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 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 ¥2229 ······ 561 889

제156조의2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 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 판 | 시 | 사 | ઌૢૼ |
|---|---|---|-----|
| | | | |

공보호수 쪽수

제164조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 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 11. 22. 2015도10651 ······ 553 95

제166조

★ 1.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 3. 21. 2015¹ 22229 ······ 561 8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두53498 ······ 564 11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3조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구)

제2조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 - 53498 ······ 564 1193

공보호수 쪽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 - 53498 ······ 564 119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구)

제6조 (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7조 (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 9조 (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제 **13**조 (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 2019. 4. 25. 2018 - 53498 ······ 564 1193

선고일자별 판결 색인

| 선고연월일 | 사 건 번 호 | 공보면수 | 선고연월일 | 사 건 번 호 | 공보면수 |
|-------------|---------------------|------|-------------|--------------------|------|
| 2018.11. 6. | 2018스32 | 30 | 2018.11.29. | 2016두50037 | 205 |
| 2018.11. 9. | 2014도9026 | 81 | " | 2016두53180 | 210 |
| " | 2015다75308 | 1 | " | 2016두65602 | 213 |
| " | 2015두41630 | 62 | " | 2017다35717 | 138 |
| " | 2015두59686 | 34 | " | 2017다247190 | 140 |
| " | 2016두51610 | 42 | " | 2017다286577 | 142 |
| " | 2016후1376 | 76 | 11 | 2017도2661 | 239 |
| " | 2018두49376 | 65 | 11 | 2017도2972 | 242 |
| 2018.11.15. | 2015다247257 | 4 | " | 2017도8822 | 245 |
| " | 2016다20916 | 8 | " | 2018다200730 | 148 |
| " | 2016다244491 | 14 | " | 2018다207854 | 151 |
| " | 2016다258209 | 20 | " | 2018도10779 | 248 |
| " | 2016두45158 | 46 | " | 2018도13377 | 253 |
| " | 2016두48737 | 51 | " | 2018두38376 | 217 |
| " | 2016두49044 | 56 | " | 2018두41082 | 177 |
| " | 2017두33008 | 68 | " | 2018두41532 | 180 |
| " | 2017두54579 | 74 | " | 2018두48601 | 184 |
| " | 2018다28273 | 25 | " | 2018두49390 | 189 |
| " | 2018도11378 | 89 | " | 2018두51904 | 193 |
| " | 2018도14610 | 92 | " | 2018旦14210 | 156 |
| 2018.11.20. | 2018마5471 | 26 | 2018.12.13. | 2015다72385 | 257 |
| 2018.11.21. | 2018⊐636 | 111 | " | 2015다246186 | 260 |
| 2018.11.22. | ★ 2015도10651 | 95 | " | 2015두40941 | 303 |
| 2018.11.29. | 2015다19827 | 113 | " | 2016다49931 | 264 |
| " | 2015두52395 | 158 | " | 2016다210849,210856 | 271 |
| " | 2015두56120 | 198 | " | 2016도19308 | 335 |
| " | 2016다18753 | 116 | " | 2016도19417 | 338 |
| " | 2016다48808 | 128 | " | 2016두31616 | 292 |
| " | 2016다266606,266613 | 133 | " | 2016두51719 | 295 |
| " | 2016도6329 | 223 | " | 2016두54275 | 306 |
| " | 2016도11841 | 229 | " | 2016후1840 | 333 |
| " | 2016도14781 | 232 | " | 2018다10562 | 272 |
| " | 2016두1110 | 202 | " | 2018다231536 | 276 |
| " | 2016두35229 | 163 | " | 2018다240387 | 279 |
| " | 2016두38792 | 168 | " | 2018다244761 | 283 |

| 2018.12.13. | 2018두128 | 311 | 2019. | 1.17. | 2018다24349 | 463 |
|-------------|--------------------|-----|-------|--------|--------------------|-----|
| " | 2018두51485 | 299 | " | | 2018다245702 | 466 |
| 2018.12.17. | 2016마272 | 286 | " | | 2018다260602 | 470 |
| 2018.12.27. | 2014두11601 | 391 | " | | 2018다260855 | 473 |
| " | 2015다50286 | 345 | " | | 2018두42559 | 515 |
| " | 2015다73098 | 349 | " | | 2018두55753 | 498 |
| " | 2015두44028 | 398 | 2019. | 1.24.7 | ★2016年264556 | 531 |
| " | 2016다265689 | 355 | 2019. | 1.31. | 2013다14217 | 578 |
| " | 2016다266736 | 358 | " | | 2013두14726 | 643 |
| " | 2016다274270,274287 | 364 | " | | 2015다26009 | 582 |
| " | 2016두42883 | 409 | " | | 2015다240041 | 589 |
| " | 2017다290057 | 370 | " | | 2016다215127 | 598 |
| " | 2017도15226 | 420 | " | | 2016다258148 | 602 |
| " | 2018도14262 | 425 | " | | 2016두30644 | 686 |
| " | 2018두46377 | 406 | " | | 2016두50488 | 689 |
| 2018.12.28. | 2014도17182 | 428 | " | | 2016두51658 | 659 |
| " | 2016다33196 | 374 | " | | 2016두52019 | 663 |
| " | 2017다265815 | 378 | " | | 2016두64975 | 669 |
| " | 2017두47519 | 413 | " | | 2016¤}5698 | 593 |
| " | 2018다219727 | 381 | " | | 2016후502 | 699 |
| " | 2018다272261 | 386 | " | | 2017다203596 | 607 |
| " | 2018도13305 | 430 | " | | 2017다216028,216035 | 610 |
| 2019. 1. 4. | 2018스563 | 389 | " | | 2017다228618 | 614 |
| 2019. 1.10. | 2016도8783 | 520 | " | | 2017다284885 | 619 |
| " | 2016도21311 | 523 | " | | 2017다289903 | 622 |
| " | 2017두31538 | 501 | " | | 2017두40372 | 674 |
| " | 2017두43319 | 474 | " | | 2017두46455 | 677 |
| " | 2017두75606 | 479 | " | | 2017두75873 | 692 |
| 2019. 1.17. | 2015다227000 | 437 | " | | 2017후424 | 702 |
| " | 2015다236196 | 442 | " | | 2018다227520 | 626 |
| " | 2015두60662 | 505 | " | | 2018다255105 | 629 |
| " | 2016다256999 | 445 | " | | 2018다267252 | 633 |
| " | 2016다277200 | 449 | " | | 2018다287751 | 636 |
| " | 2016두45813 | 510 | " | | 2018도16474 | 707 |
| " | 2016두56721,56738 | 481 | " | | 2018두43996 | 681 |
| " | 2016두60287 | 489 | " | | 2018두57452 | 695 |
| " | 2017다245798 | 459 | " | | 2018스566 | 638 |
| " | 2017두47137 | 491 | 2019. | 2.14. | 2015다66052 | 715 |
| " | 2017두59949 | 496 | " | | 2015다217287 | 721 |
| | | | | | | |

| 2019. 2.14. | 2015다240195 | 725 | 2019. 3.25. | 2016마 5908 | 951 |
|-------------|---------------------|------|-------------|------------------|------|
| " | 2015다244432 | 728 | 2019. 3.28. | 2015다49804 | 952 |
| " | 2015다255258 | 731 | " | 2015두3591 | 995 |
| " | 2015두52616 | 765 | " | 2016다211224 | 959 |
| " | 2016다245418,245425, | | " | 2016두43176 | 986 |
| | 245432 | 734 | " | 2017다213470 | 961 |
| " | 2016도6497 | 777 | " | 2018다44879,44886 | 965 |
| " | 2016두34110,34127 | 768 | " . | ★2018도16002 | 1005 |
| " | 2016두41729 | 753 | 2019. 4. 3. | 2014도2754 | 1026 |
| " | 2017다203763 | 738 | " | 2015다250413 | 969 |
| " | 2017다274703 | 743 | " | 2016다40910 | 972 |
| " | 2017두62587 | 755 | " | 2017두52764 | 988 |
| " | 2017두63726 | 771 | " | 2017두66824 | 998 |
| " | 2017두65357 | 761 | " | 2018다271657 | 977 |
| " | 2018다264628 | 747 | " | 2018다286550 | 980 |
| 2019. 2.21. | ★2014두12697 | 811 | " | 2018다296878 | 984 |
| " | ★2017후2819 | 830 | " | 2018후11698 | 1002 |
| " | ★2018다248909 | 781 | 2019. 4.10. | 2017마6337 | 1033 |
| 2019. 2.28. | 2016다255613 | 800 | 2019. 4.11. | 2015다254507 | 1037 |
| " | 2016다271608 | 803 | " | 2015도1230 | 1129 |
| " | 2017다290095 | 807 | " | 2016다276719 | 1045 |
| " | 2017두71031 | 824 | " | 2017다269862 | 1048 |
| " | 2018도13382 | 835 | " | 2017두57899 | 1122 |
| " | 2018마800 | 810 | " | 2018다203715 | 1051 |
| 2019. 3. 6. | 2017마 5292 | 839 | " | 2018다277419 | 1057 |
| " | 2018마6721 | 842 | " | 2018다284400 | 1062 |
| 2019. 3.14. | 2015두46321 | 867 | " | 2018다291347 | 1068 |
| " | 2018다255648 | 846 | " | 2018다300708 | 1072 |
| " | 2018다260930 | 849 | " | 2018두42955 | 1116 |
| " | 2018다277785,277792 | 853 | " | 2018두66227 | 1120 |
| " | 2018다281159 | 1031 | " | 2019도1503 | 1132 |
| " | 2018다282473 | 855 | 2019. 4.18. | ★2016다2451 | 1074 |
| " | 2018도18646 | 882 | " . | ★2017도14609 | 1134 |
| " | 2018두56435 | 872 | 2019. 4.23. | 2014다27807 | 1153 |
| " | 2018두60847 | 876 | " | 2016다277538 | 1161 |
| " | 2018마7100 | 859 | " | 2017두48482 | 1195 |
| 2019. 3.19. | 2018마6364 | 862 | " | 2018다287287 | 1165 |
| 2019. 3.21. | ★2015모2229 | 889 | 2019. 4.25. | 2015두39897 | 1181 |
| " | ★2017도16593-1 | 917 | " | 2017다21176 | 1170 |

| 2019. 4.25. | 2017두33510 | 1186 |
|-------------|-------------|------|
| " | 2018다212993 | 1176 |
| " | 2018다287362 | 1179 |
| " | 2018도20928 | 1201 |
| " | 2018두49642 | 1189 |
| " | 2018두53498 | 1193 |
| | | |